■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79-220.
http://doi.org/10.17948/kcs.2019..84.179

【특집2: 삼일운동과 지역】

1919년 3월 황해도 수안 만세시위의 재구성*

정병욱(鄭昞旭)**

목 차

1. 서론: 왜, 어떻게?
2. 수안면 만세시위 상의 성립 과정
3. 의문과 만세시위의 재구성
4. 결론: '구속자 석방'의 의미

국문초록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만세시위는 헌병대 인도를 요구하며 하루에 세 번, 총격을 무릅쓰고 격렬하게 시위한 '공세적 시위'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연구에서 일본 헌병이 자신들의 발포를 합리화하고 조선총독부 일부 판·검사가 '내란죄'를 적용하기 위해 쓴 용어('습격', '폭동' 등)와 해석(헌병대 '접수' 기도)을 사료 비판 없이 부정적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 관점만 바꾸어 원용함으로써 구성된 것이다. 시위 횟수, 발포 계기, 요구사항에 대해 기존의 관행적 이해에서 벗어나 합리적 의심을 통해 새로운 역사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안군 천도교도의 시위가 '공세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

* 이 논문은 201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구지원(3·1 운동의 시간과 공간 연구)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다. 기존 연구에서 간과했던 시위대의 요구사항 '구속자 석방'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피지배자가 자신을 보호해야 줄 국가가 사라진 상황에서 그 국가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 것 중 하나가 종교였다. 그런 종교공동체의 지도자와 동료가 독립선언 시위를 준비하다가 식민지 권력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에 대한 수안지역 천도교도의 석방 요구와 시위는 식민지 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부정이라 할 수 있다. 그 바탕에는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주제어: 수안면 만세시위, 천도교도, 공세적 시위, 구속자 석방, 종교공동체.

1. 서론: 왜, 어떻게?

1919년 3월 3일 황해도 수안군의 천도교도가 일으킨 수안면 만세시위[1]는 당대부터 삼일운동을 대표하는 시위였다. 조선총독부 일부 판검사는 3월 1일 독립선언이 '내란죄'임을 증명하는 '폭동' 중 하나로 예시하였으며,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 독립운동세력은 일본의 만행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하였다. 후대 연구에서도 수안면 만세시위는 삼일운동의 '공세적 시위'를 대표하는 사례이다. 이정은에 의하면 수안면 만세시위는 관공서에 쇄도하여 이를 습격하는 '공세적 시위' 중에서도 '헌병대 철수'를 요구한, 일제의 식민지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위운동이었다.[2]

수안면 만세시위의 강력함에 비해 그 요인에 대한 설명은 빈약하다. 외적 요인으로 도시 평양과 비교하여 농촌 수안의 경우 탄압하는 일제 측의 힘, 장악력이 약했던 점이 지적된다.[3] 과연 수안의 헌병대가 약해서 시위대가

1) 당시 수안군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3일부터 18일까지 총 7건이다.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19.2, http://db.history.go.kr/samil(2019.08.18 검색). 이 글에서 다루는 수안 만세시위는 3월 3일 수안군 수안면에서 벌어진 시위를 말한다.

2) 이정은,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 148면, 161-164면. 최근 연구로 성주현, 「3.1운동과 공세적 만세시위의 전개—강서군·맹산군·수안군을 중심으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 한국사연구회 편, 경인문화사, 2019 참조. '공세적 시위'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이정은은 '평화형'과 대비하여 '관공서 쇄도 또는 습격'을 포함한 강력한 시위를 말하는 것 같다. 성주현은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일제 식민지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한 시위,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한 시위를 '공세적 시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같은 글, 134-135면. '공세적 시위'를 어떻게 정의하든 둘은 수안면 시위를 헌병대 '습격'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공세적 시위'를 전개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같은 농촌 지역 간의 차이, 일본 관헌과 충돌한 곳과 충돌 없이 시위를 마친 곳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내적 요인으로 시위 주체가 강한 조직을 갖춘 천도교도였다는 점이 거론된다.[4]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것도 그렇게 견실한 대답이 아니다. 천도교 조직이 수안군에 버금가고 중앙에서 수안군과 같은 시위 지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웃 곡산군의 천도교 시위대는 헌병대의 지시에 따라 해산했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한편 일본의 原口由夫는 당시 일본 관헌의 보고에서 '폭민 - 폭행(습격・돌입) - 부득이한 발포'가 하나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 및 선교사 측 기록과 비교하여 이러한 '발포 합리화' 주장이 갖는 기만성을 드러냈다. 삼일운동의 비폭력적 성격을 주장하는 그는 일본 관헌 사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삼일운동을 '폭동'으로 보는 역사연구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5] 삼일운동의 '비폭력성'만 강조하는 역편향을 경계해야겠지만, 혹시 한국 삼일운동 연구에서 일본 측 자료의 '습격'을 사료 비판 없이 격렬한 시위, '공세적 시위'의 증거로 보는 경향은 없을까? 그의 연구에선 언급되지 않은 사례지만 수안면 만세시위의 '습격'도 그의 지적을 염두에 두며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첫째, 현재 알려진 수안면 만세시위의 歷史像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추적 검토하는 것이다(2장). 이를 바탕으로 둘째, 기존 역사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안면 만세시위를 재구성해보겠다(3장). 감히 말하자면 수안면 만세 시위자들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지의 존재이다. 당시 '폭도'였다가 이제 강력한 시위 주체, '독립유공자'가 된 수안군의 천도교도. 그들은 왜 어떻게 같은 날 총탄을 무릅쓰고 세 번이나 시위하였을까? 우리는 그들의 강력한 운동성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며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 글은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한 걸음이다.

---

3) 이정은, 앞의 책, 158-164면.

4) 주요한 연구로 조규태, 「황해도 수안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崇實史學』 제23집, 숭실사학회, 2009가 있다. 앞의 이정은, 성주현도 같은 주장을 한다.

5) 原口由夫, 「三・一運動彈壓事例の研究—警務局日次報告の批判的檢討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23輯, 朝鮮史研究會, 1986, 224-225면, 229면, 240면.

2. 수안면 만세시위 상의 성립 과정

1) 일제강점기 : 습격 대 만행

(1) 일본 헌병·경찰, 군, 도장관의 보고: 습격

1910년대 헌병경찰제하에서 군청소재지인 수안면에는 헌병분대가 배치되었다. 헌병분대는 면의 만세시위 상황을 상층에 보고했을 것이고, 그 정점에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의 경무총장과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의 헌병사령관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두 최고직은 일본 육군장관, 즉 육군장군이 겸임했다.[6] 일본 측의 수안면 만세시위 보고 자료를 정리한 〈표 1〉을 보면 경무총감부와 헌병사령부 두 계통에서 정보가 생성되는 것 같지만 헌병경찰제하에서는 하나의 계통이다. 이러한 보고를 바탕으로 조선총독과 조선군사령관이 일본 육군대신에 전보를 보냈다. 당시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일본 육군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표 1〉 조선 헌병·경찰·군과 도장관의 '수안면 만세시위' 관련 보고[7]

번호	작성/발신 일시	문서명	작성/발신자 (→ 수신자)	주요 내용	비고
①	3.3. (17시 접수 상황)	獨立運動에 관한 건 (제4보)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朝鮮總督 등)	1일 밤 독립선언서 배포. - 今朝 暴民 200명 來襲, 鎭撫 중.	
②	3.4. 00:25	電報 (密第102號 其12)	朝鮮駐箚憲兵隊 司令官 (→일본陸軍大臣)	- 군중이 앞뒤로 3회에 걸쳐 憲兵分隊 습격. - 헌병 부득이하게 兵器 사용. 제2회 때 暴民 사망자 6명, 부상자 9명, 제3회 때 사망자 3명, 부상자 9명 발생. - 來襲의 징조가 있어 平壤 보병 40명 應援을 위해 수배 중.	
③	3.4. 15시	電報 (密第102號 其18)	朝鮮軍司令官 (→일본陸軍大臣)	- 3월 3일 오전 6시 天道敎徒가 憲兵分隊 습격, 일단 해산. 오전 11시와 오후 1시 2회에 걸쳐 다시 來襲, 사상자 발생.	

6) 松田利彦,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一九〇五~一九四五年』, 校倉書房, 2009, 140면.

7)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3월 3일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시위'」,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2019.08.18 검색);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 1』, 東京: みすず書房, 1966, 91-93면, 288-291면;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現(二)』, 國史編纂委員會, 1966, 718-722면.

				- 형세 不穩, 헌병대장 요청으로 보병 제77연대의 1개 소대(약 20명)를 파견, 4일 이후 보병 제78연대와 교대시킬 것임.	
④	3.4. (19시 접수 상황)	獨立運動에 관한 건 (제5보)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朝鮮總督 등)	- 3일 오전 6시경 天道教徒 등 약 150명 憲兵分隊로 몰려들어 說諭 해산. -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7시까지 3회에 걸쳐 천도교도 약 50-150명 來襲. 헌병분대 구내로 쇄도, 헌병분대와 군청을 引渡하라고 압박 폭행. - 위험 급박, 도저히 진압할 길이 없어서 마침내 총기 사용. 폭도 9명 죽이고 18명 중상 입혀 격퇴.	「매일신보」 3.7 보도
⑤	3.4. 19:31	電報 (密第102號 其15)	朝鮮總督 (→일본陸軍大臣)	- 3월 3일 暴民 세 차례 헌병분대 습격. 첫 번째는 무사히 해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완강 저항. -헌병은 부득이 병기 사용, 사망자 9명, 부상자 18명. - 국장에 참열한 보병 77연대 중 중 장교 이하 20명 수안에 급행.	3.6. 陸軍大臣 → 內務大臣
⑥	3.3.	電報	黃海道長官 (→政務總監)	3회 來襲, 각 관청 기타 헌병대에 피난토록 함.	
⑦	3.3.	電報	黃海道長官 (→政務總監)	11시 반 遂安천도교도 150명 헌병대에 來襲, 해산 명령했으나 함성 지르며 난입하려 해 헌병이 발포하여 즉사 6명, 중상 9명.	
⑧	3.8.	騷擾事件ニ關スル件報告	黃海道長官 (→朝鮮總督)	천도교도 一團, 헌병분대에 전후 3회 來襲, 해산 명령 듣지 않고 함성 지르며 난입하려 해 헌병 발포, 2회에 걸쳐 즉사 9명, 중상 18명. 각 官署, 헌병대로 피난, 일본인 義勇團, 기타 夜警團 조직하여 경계, 4일 평양 보병장교 이하 30여 명 來着.	

〈표 1〉을 보면 수안면 만세시위 전모가 중앙에 전달된 것은 3월 3일 밤이었던 것 같다. 헌병사령관이 일본육군대신에 보내는 전보(②)를 보면 군중의 3회 '습격' - '부득이하게' 병기 사용 - 사상자 발생이라는 기본 골격이 제시되었다. 이후 주체가 천도교도, '폭민'으로 바뀌기도 하고, 시위 시간과 횟수에 약간의 혼선이 생기기도 했지만(④) 기본 골격은 바뀌지 않았다. 시위대의 요구 사항도 '헌병분대와 군청을 인도하라'로 정리되었다(④). 조선헌병대사령부・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가 작성한 '朝鮮騷擾事件一覽表(1919년 4월말 조사)'에 최종적으로 정리 집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遂安邑內, 暴行 1, 騷擾人員 450명, 騷擾者種別 천도교도, 檢擧人員 83명, 暴民 死亡 13명, 暴民 負傷 18명.'[8] 사망자 수가 3월 당시 파악한 9명보다 4명이 늘어 13명으로 집계

8) 兒島惣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 → 山梨半造(陸軍次官), 「朝鮮騷擾事件一覽表ニ關スル件」, 1919.10.2, 55면.

되었다. 헌병경찰 외에도 도장관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나 조선총독에게 시위 상황을 보고했다(⑥-⑧). 시위대가 '함성을 지르며 헌병분대로 난입하려 했다'는 묘사와 방어를 위한 일본인 '의용대' 및 '야경단' 조직이 눈에 띈다.

조선 헌병・경찰 등이 작성한 보고의 특징은 시위대의 '폭행'을 부각하면서 발포가 어쩔 수 없었음, 부득이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당시 신문도 이를 따랐다. 삼일운동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보도 통제가 풀려 『京城日報』는 3월 6일 석간부터 『매일신보』는 3월 7일 자부터 '騷擾'라는 제목으로 각 지역의 만세 시위가 보도되었다. 『매일신보』 3월 7일 자 첫 번째 삼일운동 관련 기사는 '각지 소요사건: 경성을 위시하여 각 지방 소동, 황평 양서에는 폭행이 심하다'란 제목으로 실렸다. '황평 양서'란 황해도 평안도 두 서북지역을 말한다. 이때 보도된 각 지역 소식을 보면 수안의 사망자가 제일 많았다.

> 遂安(수안), 아홉명이 죽어
> 삼월 삼일 아침에 약 이백 명의 천도교가 수안헌병대를 음습하였으므로 설유하야 해산케 하였으나 오전 열 시쯤부터 오후 일곱 시까지 세 번이나 천도교도의 일단은 함성을 지르면서 본대 안에 쇄도하여 본대와 군청을 내어놓으라 하여 위험이 급박하여 도저히 진압하는 방책이 없었으므로 본대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폭민 아홉 명을 죽이고 십팔 명의 중상자를 내어 헤쳐 보냈더라.

이 보도에 따르면 수안면에선 천도교도가 아침 1회, 오전 10시-오후 7시 3회, 총 4회 시위하였고 '진압하는 방책이 없어', 즉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하여 '폭민' 측에 사상자가 27명 나왔다. 이 기사는 3월 4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에서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5보)」를 거의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표 1〉의 ④). 시위대의 헌병분대와 군청을 '인도하라'는 요구가 '내어놓으라'라고 번역되었을 뿐이다. '오후 7시까지' 총 4회 시위는 이 두 자료 외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이나 뒤에서 보듯이 해방 이후 자주 인용되어 혼란을 초래했다.

이러한 신문 보도에 대해선 당대부터 비판이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9월 편찬을 마무리한 『한일관계사료집』에 다음과 같이 썼다. "三月

以來로 日人의 新聞마다 韓人이 先히 憲兵隊와 駐在所를 襲擊함으로 不得已 武力으로 待ᄒᆞ엿다 함은 皆日人이 發砲虐殺ᄒᆞᆫ 理由를 附ᄒᆞ야 自過를 掩護ᄒᆞᄂᆞᆫ 藉口뿐이고 手無寸鐵한 韓人이 先히 襲擊ᄒᆞ기ᄂᆞᆫ 毫無ᄒᆞᆫ事實이라."[9]

(2)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측 기록: 만행

수안면 시위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경성의 김윤식은 3월 5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수안의 民團이 폭동을 일으켜 헌병대장이 죽고 일본 병사가 무기를 휘둘러[放鎗] 민의 무리 중에 죽은 자가 30여 명이라더라."[10] 아직 삼일운동에 대한 신문 보도가 있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윤식은 수안면 소식을 사람 편에 전해 들은 것 같다. 소문의 골자는 '폭동 - 헌병대장 사망 - 헌병의 무기 사용 - 사상민 발생'이다. 소문만 들으면 양측이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졌던 것 같다. 일본 측 기록을 보면 수안면 시위에서 일본 측 사상자나 부상자는 없었다.[11] 어쨌든 '방창(放鎗)'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윤식이 일본 측 자료처럼 '부득이함'을 옹호했던 것 같지는 않다.

김윤식 일기가 전하는 소문과 앞의 『매일신보』 보도 내용을 비교해보면 일본 측이 보도 해제를 통해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당시 조선헌병사령관 兒島惣次郎은 '유언비어'가 성하고 '과대한 풍설'이 유전되어 민심을 미혹시킬 우려가 있으니 "도리어 사실을 보도시키고 동시에 당부[조선헌병대]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발표하여 게재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3월 6일부터 일정한 조건 아래 삼일운동 보도를 허용했다.[12] 수안면 시위의 경우 일단 사실 여부는 차지하고 보면 소문은 헌병대의 폭력(방창)과 그로

9) 國史編纂委員會 編,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한일관계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a, 201면.
10)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史料叢書11)續陰晴史』 下, 國史編纂委員會, 1960, 490면. "聞元山民黨聚鬧被逮者, 五十餘人, 遂安民團暴動, 憲兵隊長見殺, 日兵放鎗, 民黨死者三十餘人云."
11) 성주현은 '공세적 시위'에서 헌병경찰 측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며 수안군에서는 헌병 1명이 죽고 보조원 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했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성주현, 앞의 글, 160면.
12) 兒島惣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 → 山梨半造(陸軍次官), 「新聞取締方針ノ件」, 1919. 3. 12; 姜德相 編, 앞의 책, 123-124면. 조선총독부 측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는 임경석, 「3.1운동기 친일의 논리와 심리—『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6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8, 50-51면 참조.

인한 많은 사망자(30여 명)를 전했다. 반면 신문은 폭력(총기 사용)의 '부득이함'을 강조하면서 적은 사망자(9명)를 전했다.

수안면 만세시위에 대해선 외국인 선교사와 그에 바탕을 둔 한국인 측 기록이 남아있다.

〈표 2〉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측 '수안면 만세시위' 기록[13]

자료명	저자/ 발행시기	주요 내용
한국의 상황 The Korean Situation: Authentic Accounts of Recent Events by Eye Witnesses	미국기독교 연합회 동양관계 위원회, 1919.8	(만행 증거 5, 수안읍에서) - 2, 3백 명이 황해도 수안읍 헌병분대를 찾아가 한국이 독립을 선언했으니 떠나가라(leave)고 말했다. 헌병들은 한국이 독립을 성취했다면 물론 떠나갈 것지만 그러나 떠나기 전에 서울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군중은 이 말을 듣고 만족하여 물러났다. 두 시간 뒤에, 또 다른 군중(another crowd of people)이 몰려와 같은 요구를 했다. 이번에는 헌병들이 그들에게 발포하여 5명을 사살했다. 그 외 많은 사람이 부상하고 투옥되었다. - 그 후, 한 노인이 헌병대로 찾아가 한국인들에게 자행한 처사에 항의했다. 헌병들은 이 노인도 쏘아 죽였다. 노인의 부인이 찾아와서 남편의 시체를 보자 그 옆에 주저앉아 한국의 관습에 따라 울부짖었다. 이 여인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통곡하다가 역시 죽임을 당했다. 그날인지 다음 날 아침인지, 이 부부의 딸도 헌병대에 갔으나 칼에 베였다. - 감옥에 갇힌 부상자들은 2일간 있는 동안 약간의 밥은 받았으나, 물은 조금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 목이 타서 자신들의 오줌을 마셨다 한다. 2일 후 석방된 이들 중 일부는 楠亭(Tulmichang)에 있는 수안 광산회사 병원에 이송되었다. 이들의 상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壞疽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종아리의 심한 상처가 괴저되었다. 또 한 사람은 부상한 후 잘 돌보지 않아 썩어들어 간 팔 하나를 절단해야 했다. 병원에 이송된 사람 중 한 사람만 약 39세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60세가 넘었다.
獨立	大韓民國 臨時政府, 1919.9.27	(미국 상원의 한국사정보고서_제5장 일인의 만행, 수안읍에서) - 황해도 수안읍서는 시민들이 헌병대에 밀려가 한국이 독립을 선언하였으므로 퇴거키를 청하니 헌병대에서는 물론 하려니와 서울서 명령이 와야 되겠다 하여 군중이 散歸 하니라. 2시간쯤 후에 다시 다른 一隊가 와서 또 퇴거를

13) ㉠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of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The Korean Situation: Authentic Accounts of Recent Events by Eye Witnesses*, New York, 1919(?), pp.32-33. 원본은 「전자사료관」, 국사편찬위원회, http://archive.history.go.kr/id/AUS208_00_00C0036(2019.08.18 검색). 번역본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4: 3.1운동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b, 367면. ㉡대한민국임시정부, 『獨立』 第14號, 1919.9.27, 1면(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별책 1: 독립신문』, 국사편찬위원회, 2005에 수록). ㉢김병조 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 독립기념관, 1921/2018, 45면(원문), 71면(조판본); 번역본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6: 삼일운동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c, 202면. 표의 내용은 필자가 일부 원문과 대조하여 수정하거나 현재 표기법으로 고침.

		요구하니 이때에는 헌병대가 이에 발포하여 5명을 殺하고 기타 [부]상자가 다출하고 또한 투옥된 자도 다수더라. - 한 노인이 이 만행을 항의하러 갔다가 피살하니라 그 처가 이를 발견하고 남편 곁에 앉어 통곡하매 헌병이 울지 말라 명하나 듣지 않으므로 또한 창살하다. 익일에 헌병대로 찾아간 두 딸[娘]도 검으로 찔렀다. - 부상자들은 이틀씩 감옥에 있었다. 그동안에 밥[飯]만 조금 주고 물은 안 주므로 어찌 목이 말랐던지 소변까지 마셨더라. 2일 후에 다시 헌병대로 넘어왔다가 그중 數人은 광산병원으로 갔는데, 저들의 상처는 치료를 가하지 않으므로 괴저壞疽를 生하였더라. 1인은 다리[腿] 심히 상하였는데 물크러졌으며 또 1인은 팔을 절단치 않지 못하게 되니 옥중에서 상처를 간호치 않은 까닭이다. 병원으로 간 사람은 39세와 60세 2인이더라.
韓國獨立運動史略 上篇	金秉祚, 1921.3 (또는 1922.6)[14]	(수안 인민의 독립선언) - 수안군의 市民들이 헌병대에 몰려와서 말하기를, "한국이 독립을 선언하였으니 너희들은 이제 退去함이 마땅하다." 하니, 헌병이 발포하여 羅義錦・李仁植 이하 15명을 사살하고 부상한 자와 갇힌 자가 많았다. - 이에 한 노인이 만행을 항의하러 갔다가 또 피살당하니, 노인의 아내가 시체 옆에 이르러 목을 놓아 크게 우니, 일병이 강제로 그치라 하였다. 노파가 듣지 않으니, 일병이 또 창으로 찔러 죽이고, 즉시 천도교당을 강제 점령하여 거기에 守備隊가 거처케 하고 공금 6백 원을 탈취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유가족인) 두 처녀가 만행을 또한 힐난코자 헌병대에 갔다가 칼에 찔렸다. - 다수의 부상자를 그대로 옥에 가두고 음료수를 주지 아니하니 수인들이 목이 타서 오줌으로 갈증을 면하였다. 被囚者 85인 중에 혹은 腿骨이 파쇄되기도 하였고, 혹은 어깨와 팔이 단절되었으며, 그중에서 요행으로 礦山病院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자는 2인뿐이었다.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가 1919년 7월 인쇄해서 8월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에는 일본 만행의 한 증거로 수안면 시위 사건이 제시됐다.[15]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① 시위와 발포, ② 항의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만행, ③ 치료받지 못한 부상자들. 이 보고서는 미국 상원에 제출되어 의사록에 등재되었고, 이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발행했던 기관지 『독립』에 제6호(1919.9.6.)부터 번역 연재되었는데,[16] 수안면 만세시위는 제14호(1919.9.27.)에 실렸다(〈표 2〉 참

14) 『한국독립운동사략』의 실제 출간일에 대해서는 최우석,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한일관계사료집』,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제99호, 서울역사편찬원, 2018, 98-100면 참조.

15)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관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해서는 김승태, 「3.1독립운동과 선교사들의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125-134면 참조.

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1b, 141-143면; 대한민국임시정부, 『獨立』 第6號, 1919.9.6, 1면. 10월 13일 자 미국 상원 의사록에도 두 번 '수안 사건'이 언급되었는데, 모두 『한국의 상황The

조). 『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과 같은 구성과 내용이다. 박은식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실린 '수안 사건'(부록-세계여론, 미국 상원의 한국 사정보고서)은 이 『독립』의 기사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17] 『독립』이나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약간의 번역 오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석은 그 모본인 『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의 일본 헌병·경찰 측 자료와 대조되는 부분은 시위 횟수이다. 일본 헌병·경찰 측이 세 차례 시위로 기록했지만, 선교사 측의 자료 『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에는 시위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아울러 앞의 일본 측 자료와 달리 선교사 측 자료는 첫 번째 시위와 두 번째 시위의 시위대를 구별했다. 두 번째 시위대는 '또 다른 군중(another crowd of people)', 『독립』에 따르면 '다른 일대(一隊)'였다.[18] 또 시위대가 헌병대에 말한 요구 사항은 "한국이 독립을 선언했으니 떠나가라", 즉 '퇴거'였다. 일본 측 자료의 "헌병분대와 군청을 인도하라"보다 포괄적이다.

1921년경 상해에서 김병조가 쓴 『韓國獨立運動史略 上篇』에도 수안면 만세 시위가 실렸다(〈표 2〉 참조). 내용을 보면 『한국의 상황』의 구조를 따랐지만, 세부적으로 첨삭이 이뤄졌다. 시위의 횟수나 시위대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으로 사망한 자 2인의 이름(나인집, 이인식)이 명기됐고, 사망자 수도 15명으로 일본 측 기록에 비해 늘었다. 또 '수비대', 즉 지원하러 온 헌병대의 천도교당 점령과 재산 탈취가 부기되었다. 이는 앞의 일본 측 기록이나 선교사기록에 없는 것이지만 근거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천도교 수안군 교구에서 1909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天民寶錄』에는 이인식(李仁植, 1855년생)이 나온다. 나의집은 나오지 않지만 나태집(羅泰輯, 1872년생)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오기이거나 같은 항렬자를 쓰고 있는 一家일 가능성이 있다.[19]

Korean Situation』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1b, 221-330면.

17)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上海: 維新社, 1920;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巖朴殷植全集 제2집』, 동방미디어(주), 2002, 201-202면. 한글 번역본은 박은식 지음, 김도형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428-456면 참조.

18)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는 두 번째 시위를 '다른 시위대'가 아니라 같은 시위대가 '다른 곳(他所)'에 간 것으로 번역됐다. 박은식 지음, 앞의 책, 201면.

19) 黃海道遂安郡教區室(?), 『遂安郡天民寶錄』, 1909, 21면, 68면.

'천도교당 점령'은 1920년 11월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의 인용 신문조서에 나온다.[20] 수감자 수 85명도 앞서 본 조선헌병대사령부・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의 「朝鮮騷擾事件一覽表(1919.4월 말 조사)」에 유사한 수치(검거자 83명)가 나온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것인지 상해로 건너온 해당 지역의 한국인을 통해서 수집된 것인지, 정보체가 기록인지 전언인지 알 수 없지만, 김병조가 수안 만세시위를 집필하면서 기존 일본 측과 선교사 측 자료 외에도 관련 정보를 수집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측 기록은 일제의 만행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만세시위 자체는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김병조의 경우는 몇 차례의 시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기술했다. 만행의 예로 기술된 항의하는 노인 얘기와 부상자 상황은 누구에게서 들은 것일까? 『한국의 상황 The Korean Situation』은 재한 선교사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내온 보고서, 편지, 진술서, 신문 기사 등에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이며 증거문서들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 출처와 인명을 감추었다.[21] 부상자 상황은 아무래도 병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의 상황』의 원자료가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3) 판결문과 신문조서: '내란죄' 적용 시도

조선총독부는 수안면 시위를 다른 지방의 만세시위와 다르게 취급했다. 삼일운동을 담당했던 조선총독부 판검사 중 일부는 몇몇 사건을 '내란죄'로 다루고자 했다. 당시 내란죄는 '정부를 전복하거나 영토를 빼앗거나 기타 朝憲[국헌]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고등법원에서 담당했다.[22]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이 있어야 한다. 1919년 8월 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판사 永島雄藏은 '손병희 등 47인'의 독립선언 사건을 '내란죄'

20) 京城覆審法院, 「1920刑控528・529・530號 判決(安鳳河 등 68인)」, 1920.11.22.
2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71b, 340면.
22) 朝鮮總督府 編, 「第15輯一'刑法' 제77조」, 『朝鮮法令輯覽 下卷』, 朝鮮行政學會, 1940b, 316-317면; 「第14輯一'裁判所構成法' 제15조의 제2」, 같은 책, 3면; 「'朝鮮總督府裁判所令' 제3조3항」, 『朝鮮法令輯覽 上卷』 第3輯, 朝鮮行政學會, 1940a, 74면.

로 판단하고 고등법원으로 넘기면서 중요 근거로 "피고들의 선동에 호응하여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및 원곡면 등에서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야기"시켰다는 점을 들었다.[23] 세간에서 말해지는 '3대 시위' 운운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언급된 세 곳의 시위 사건도 '내란죄'로 간주하여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다. 양성·원곡면 시위는 8월 8일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결정되었다. 위 세 곳 시위 외에도 경기도 수원군 장안·우정면 시위, 경상남도 창원군 진동면 시위 등이 내란죄로 고등법원에 이관되었는데, 각각 8월 7일 경성지방법원 예심, 11월 6일 부산지방법원 공판에서 결정되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정할 수 없지만 수안면 시위도 1919년 하반기에 비슷한 절차를 밟아 해주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던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20년 3월 22일 고등법원은 손병희 등의 독립선언과 수안면 등 위의 다섯 시위 사건을 내란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경성지방법원을 관할재판소로 지정했다. 그해 8월 초 경성지방법원은 이 사건들에 대해 변호사 허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불수리' 판결을 내렸으나, 검사가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 경성복심법원은 경성지방법원의 '공소불수리' 판결을 취소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가 1920년 말과 1921년 초 각 사건 피의자에게 형을 선고했다(〈부표 1〉 참조).[24]

일제강점기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이 종료되면 판결문은 판결 법원에 남고 이외 기록은 처음 기소했던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삼일운동 관련 사건 중 38도선 이북에서 일어난 것의 사건기록과 판결문은 이북 소재 지방법원 또는 평양 복심법원에 보관되었다. 이 중에서 피의자 또는 검사가 상고하여 경성의 고등법원까지 올라오면 그 판결문만 이남에 남는다. 그런데 수안면 시위의 경우 위와 같이 '내란죄' 여부 문제로 경성에 이관되어 고등법원(예심),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을 거쳤기 때문에 사건기록은 해주지방법원에 이관되었겠지만 각 판결문은 경성에 남아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되

23) 京城地方法院, 「豫審終結(孫秉熙 등 47인)」, 1919.8.1.

24) '내란죄' 관련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73-106면; 장신, 「삼일운동과 조선총독부의 司法 대응」, 『역사문제연구』 제18호, 역사문제연구소, 2007, 154-157면 참조.

어 있다. 판결문은 보통 사건번호, 피고인의 인적 사항, '주문' '이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유'는 다시 검사의 공소사실을 정리 기재한 다음 '주문'(판결)의 근거를 제시한다. 보통 판결문을 통해 어떤 사건을 파악하고자 할 때 정리된 공소사실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아마 서사 구조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의 주장이며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또 판결문 전체는 판사의 견해가 제시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세 판결문, 특히 정리된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수안면 시위 내용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판결문 '공소사실'에 나타난 '수안면 만세시위'[25]

법원	구분	주요 내용
고등법원예심 1920.3.22 경성지방법원 1920.8.7	1. 모의/체포	- 3월 1일 밤 곡산군 천도교도 이경섭, 서울서 가져온 독립선언서 100여 매를 수안군 천도교구장 안봉하에게 전달. - 3월 2일 안봉하 등이 교구실에서 전교사, 전도사와 함께 3월 3일 시위를 모의. 수안헌병대, 교구실 수색, 안봉하 등 14인 검거.
	2. 來襲(시위)	- 체포 면한 이영철[교구실 소사], 홍석정[전 교구장], 한청일[전교사] 등이 다중을 인솔하여 헌병분대로 몰려가 독립 만세를 외치고 동 분대의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운동을 기획, 각 면 천도교도에게 교구실로 모이도록 연락. - 3월 3일 1차 내습/시위: 오전 6시경 교구실에 모인 130-40명, 이영철이 선두에 서고 한청일이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시작. 금융조합 앞에서 이영철, 군중을 향해 '우리는 오늘로써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 자유민이 되고 조선독립을 이룰 것이니, 모두 독립만세를 부르고 수안 헌병분대를 퇴거시켜야 한다' 연설. 헌병분대에 이르러 이영철과 홍석정 등이 헌병대원에게 '조선은 독립하였다', '공화정치는 세계의 대세이다', '빨리 헌병분대를 引渡하라' 요구, '만일 인도하지 않으면 지방에서 천도교도들이 계속 몰려들어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 협박. 헌병분대장 설득으로 대표 2명을 남기고 일단 퇴산. - 3월 3일 2차 내습/시위: 그 사이 교구실에 신도들이 더 모여 오전 11-12시경 전교사 이동욱과 신도 오관옥이 앞장서서 약 100여 명이 헌병분대로 몰려가 '조선독립만세' 외치고 헌병분대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사무실로 돌진하려 함. 이에 발포 저지, 진압. - 3월 3일 3차 내습/시위: 오후 12-1시경 한청일, 홍석정이 그 뒤로 모여든 신도들을 지휘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헌병분대로 몰려가 차단줄을 뚫고 구내에 침입, 분대 明渡를 요구, '우리를 죽이라' 외치며 다중의 위력 과시, 사무실로 돌진해 들어와 분대원을 협박, 이에 발포 저지, 진압.
	3. 기타참여	주변 면에 거주하는 이시용, 임창운, 이두천 등 주민을 이끌고 수안면 교구실로 가다가 남정리 헌병주재소 헌병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에 복종치 않고 돌진.

25) 高等法院, 「1919特豫6・7・10號 決定書(安鳳河 등 71인)」, 1920.3.22; 京城地方法院, 「1919刑公402號 判決(安鳳河 등 70인)」, 1920.8.7; 京城覆審法院, 「1920刑控528・529・530號 判決(安鳳河 등 68인)」, 1920.11.22.

경성복심법원 1920.11.22	1. 모의/체포	독립선언서 약 70매 수교, 안봉하, 나찬홍(금융원) 등이 각 면 천도교도들에 독립선언서 교부.
	2-4.내습(시위)	1차 시위 이영철, 2차 시위 이동욱, 3차 시위 양석두 지휘, 발포 언급하지 않음. 3차 시위 '사무실 돌진' 언급 없음.
	5. 기타참여	3명만 행진 계속.

고등법원 예심은 비록 본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시위대의 폭행 협박이 과격했음을 인정했다. 경성지방법원의 판결은 당시 변호사 허헌이 제기한 '공소수리' 여부에 관한 법리 해석 문제에 치중하여 정리한 사건 내용이 앞선 고등법원 예심 때와 거의 같다. 경성복심법원은 양형을 위해 피고인과 증인의 신문조서를 인용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정리했지만, 시위의 기본 내용은 이전과 비슷하다.

조선총독부 법원의 판결문은 앞의 다른 자료군에 비해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첫째, 3월 3일 시위가 있기 전날인 3월 2일 수안헌병분대가 천도교 수안교구실을 수색하여 독립선언문을 압수하고 안봉하 교구장 등 10여 명을 연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앞의 일본 경찰・헌병 측과 선교사・한국인 측 기록이 전하지 않았던 사실이다. 둘째, 1차, 3차 시위 주도자(이영철, 홍석정, 한청일)와 2차 시위 주도자(이동욱, 오관옥)가 달랐다. 또 뒤에서 좀 더 분석하겠지만 1차 시위 피고자 중에 2차 시위에도 참여한 자는 2인에 불과했다(〈부표 2〉 참조). 2차 시위대가 1차 시위대와 다른 시위대라는 선교사 측 기록이 근거가 있었다. 셋째,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었던 복심법원의 판결문에 정리된 공소사실은 예심과 지방법원의 그것에 비해 '발포'와 그로 인한 '사망'을 은폐하였다. 내용에 '발포' 사실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위 주도자 중에 사망자(홍석정, 한청일, 오관옥)[26]를 전면에 내세우지

26)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에 인용된 '증인 수안헌병분대장 野呂匡 신문조서'에 의하면 '3차 시위'에서 분대장이 "사격을 명령하자 韓淸一・吳觀玉 외 4명이 쓰러지고 나머지는 도주하였다." 한청일은 뒤에 나오는 한병익의 父로 그가 사망한 사실은 고등법원 예심 '한병익 신문조서'에 반복해서 나온다.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2: 三一運動 II』, 國史編纂委員會, 1990b, 147-151면. 오관옥은 '2차 시위' 주도자이고 '3차 시위'에도 참여했으나 이후 피고인이나 부상자 명단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컨대 현장에서 사망한 것 같다. 洪錫貞(禎)의 사망 사실은 곡산면 만세시위 관련 '이경섭 외 6인 조서'에 나온다.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3: 三一運動 III』, 國

않았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경성지방법원 공판 때 공소사실이 신문에도 보도되었으니[27] 당대에도 검・판사가 파악한 사건의 대강은 알려졌을 거다.

공소사실이나 판결문의 기초 자료로 검경과 판사가 피의자와 증인을 신문한 '신문조서'가 있다. 이 조서들은 대부분 검・경과 판사의 견해가 담겨있기 마련이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공소사실이나 판결문에 없는 사실을 전하기도 하고, 검・경 및 판사와 다른 피의자의 주장이 담겨있기도 한다. 아쉽게도 이 사건의 신문조서는 수사 종결과 함께 해주지방법원으로 이관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 파편을 볼 수 있다. 우선 경성복심법원의 판사는 공소사실을 정리한 뒤에 판결의 근거로 많은 신문조서를 인용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천도교 교구장 안봉하가 이경섭의 독립선언서 전달이 있기 전에 경성의 독립선언 준비 소식을 들었다. 검사의 안봉하 신문조서에 의하면 2월 28일 경성을 다녀온 전도사 김영만에게서 들었다. 둘째, 시위대가 검・판사가 정리한 '조선 독립(만세)', '공화정치는 세계의 대세', '헌병분대 引渡' 구호 외에도 '구속자 석방'을 외쳤음을 알 수 있다. 증인 수안헌병분대장 野呂匡은 3월 3일 첫 시위에서 한청일 등이 "죄 없는 교구장 이하를 구금하였으니 속히 석방하라" 했다고 증언했다. 헌병 오장 下川忠一도 이영철이 말한 "유치자를 석방하라"를 들었다. 셋째, 시위 이후 일본군이 교구실을 점거했다. 사법경찰관 西原學三은 검사의 신문에 수안교구실에서 남은 독립선언서 12장과 태극기 1개를 발견한 경위를 말하면서 '3월 11일 수안천도교구실을 경비대 숙소로 삼기 위해 동료 5, 6명과 청소했다'고 증언했다. 따라서 김병조가 쓴 "천도교당을 강제 점령하여 거기에 守備隊가 거처케" 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확실하다(〈표 2〉 참조). 넷째, 인용된 검사의 신문조서들을 보면 3월 2일 교구실 모의 때 참석했던 사람들은 헌병대 '점령', '점거', '접수' 방침이 정해졌고 그 임무는 홍석정, 한청일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헌병대 '접수' 모의에 관해서 피의자들은 이후 신문에서 부인했다. 1920년 11월 2일 경성복심법원

史編纂委員會, 1990c, 156면.

27) 「又!無『逆致』의大公判! 第一日은 遂安及新義州事件」, 『동아일보』, 1920.7.23, 3면.

공판에서 피의자 이응호는 3월 2일 모의 사실과 헌병대 사무 인수결의를 부인했으며 검사에게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길재는 아예 교구실에 가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홍두옥은 교구실 문밖에서 잡혀 협의한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28]

수안면 만세시위를 목격했던 한병익과 그에게 시위 상황을 들은 이경섭(수안군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자)의 신문조서가 남아있다. 수안군과 이웃한 곡산군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둘은 '손병희 등 47인'에 포함되어 '내란죄'로 경성의 법원에서 신문을 받게 되면서, 이전 곡산헌병분대와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에서 조사받은 기록도 이송되었다. 한병익은 수안면 만세시위의 사망자 한청일의 자식으로 '3차 시위'에 참여했다. 1919년 5월 10일 경성지방법원 예심판사 永島雄藏과 문답 중 수안 시위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 헌병대에 가서 무슨 일로 헌병과 충돌하였는가?
답: 처음 교구에 여러 사람이 집합하고 있을 때 헌병 4인이 와서 해산을 명하였으나 해산하지 않으니까 분대로 몇 사람을 가자고 하면서 헌병이 연행하여 가자 군중은 뒤를 따라서 헌병대로 가서 사무실에 들어갈 때 발사하였다.
문: 천도교인은 조선이 이미 독립이 되었으니 헌병을 보내고 분대를 점령하자는 것인가?
답: 그런 것은 아니다.

(…)

문: 피고 등이 헌병대에 갈 때 유리창에 돌을 던지므로 헌병은 새끼 줄(繩)로 줄을 치고 그 안에 들어서면 총살을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 등이 새끼를 끊고 들어가서 헌병이 발포한 것이 아닌가?
답: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것은 아니다. 또 새끼줄을 끊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새끼줄 있는 데까지 갔을 때 헌병이 발포하였다.[29]

이경섭은 이보다 하루 앞선 1919년 5월 9일 같은 판사에게 수안면 만세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28) 「遂安事件 七十一名 公判(二)」, 『매일신보』 1920.11.3, 3면.
29) 李炳憲, 『三·一運動祕史』, 時事時報社出版局, 1959, 745-746면.

한병익의 말을 들으면 김영만이가 선언서 2매를 전교실에 갔다 두었는데 그 이튿날 헌병대분대에서 가택수색을 하여 그것을 압수하고 그곳에 있던 교인 13인을 체포하여 분대로 연행하였다는 것이다. 선언서의 배포를 맡은 사람이 그것을 알고 다수가 집합하여 유치된 사람을 석방하고 또는 독립을 달라고 요구하니 헌병은 우리가 독립을 줄 수 없으므로 상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군중을 해산시켰다 하며 또 서부 전교실서는 부인들까지 분대에 가서 독립을 요구하니 헌병은 상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한다. 그때 어린 아이가 실수하여 분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헌병이 발포하여 그 총소리를 듣고 교구에 있던 사람들이 분대로 간즉 헌병이 총을 쏘아 사상자를 내었다.[30]

또 1919년 10월 24일 한병익은 고등법원 예심판사 楠常藏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그때 헌병분대 면에서는 군중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대문 입구에 줄을 쳐 놓고,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군중에게 경고했다는데 어떤가.

답: 나는 줄을 쳐 놓은 것은 보았으나 군중에게 그런 경고를 한 것은 듣지 못했다.

(…)

문: 그때 만세를 불렀을 뿐 아니라, 군중은 분대를 明渡하라는 구호를 연창하고, 우리를 죽이라고 하면서 분대 사무실을 향하여 돌진했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그때는 금줄을 넘어서 들어간 사람은 없었다. 또 분대를 명도하라는 구호를 연창하거나, 우리를 죽이라고 하거나 하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

(…)

문: 방금 말해 준 헌병대의 금줄을 넘어서 돌진하여 분대를 명도하라,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등의 일은 앞에서 말해 들려준 기록 중 증인 野呂匡의 공술 중에 그것이 기록되어있는데 어떤가.

답: 그것은 분대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금줄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발포했다.

한병익의 진술 간에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시위대 후방에 있어서[31]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긴 하지만 한결같이 시위대의 헌병대 '점령' 의

30) 같은 책, 684-685면.

31) 한병익은 헌병대 문에서 30보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國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1990b, 149면.

도를 부인했고 '인도하라'라는 구호를 듣지 못했다면서, 헌병분대장 野呂匡이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경섭의 전언에도 공소사실에는 없는 '유치자 석방'이란 구호가 나온다. 눈여겨볼 점은 헌병 발포를 촉발한 요인으로 새로운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경섭의 전언에 따르면 어린이가 유리창을 깬 실수가 발포를 촉발했다. 한병익은 헌병이 교구실로 와서 해산을 명령했고 몇 명을 연행해 갔던 점을 지적했다. 이런 한병익, 이경섭의 신문조서는 해방 이후에나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다. 다만 1920년 9월 21일 경성복심법원 법정에서 진술은 신문에 보도되었다. 판사가 "헌병대에게 폭동을 하였는가" 질문하자 한병익은 "헌병이 우리의 만세 부르는 것을 나와서 총을 놓고 칼로 찍어서 이십여 명이나 살인을 당한 것이지 우리가 폭동한 것이 아니오" 라 답했다.[32]

2) 해방 이후: '습격'에서 '공세적 시위'로

해방 이후에도 수안면 만세시위는 황해도를 대표하는 만세시위로 자주 거론되었다. 대한민국에서 33인과 서울 중심의 삼일운동을 넘어서 지방시위에 주목한 것은 1950년대 말 이병헌의 『三·一運動祕史』부터다. 총 천여 쪽의 책 중 백여 쪽을 할애하여 지방시위를 정리하였다. 수안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3월 3일 오전 약 삼백 명의 천도교인이 헌병대를 포위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하였는데 헌병이 해산을 강요하였으나 동일 오후 7시까지 천도교인은 우리 조선이 독립되었으니 군청과 헌병대를 철거하라고 하다가 헌병총탄에 수십 인의 부상자와 삼인의 피살자를 내고 백여

32) 「獨立宣言事件의 控訴公判, 運動費의 出處와 理由, 耶蘇側에 交附한 五千圓問題, 第二日은 韓秉益外 十三名을 訊問」, 『동아일보』, 1920.9.22, 4면. 「二十一의 續行公判, 韓炳益 訊問」, 『매일신보』, 1920.9.22에도 비슷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렸다. "(문) 그러면 삼월 삼일 오후에 군중을 몰아 가지고 그 대의 동리에 있는 수안헌병분대로 몰려가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크게 시위운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일이 있었소이다. 다만 시위운동이 아니라 조선독립을 선언하매 기뻐서 만세를 부른 것이요. 실상 시위운동은 헌병분대가 심한 시위를 하였소. (문) 헌병대가 무슨 시위운동이란 말이냐? (답) 우리는 결코 난폭한 행동은 않기로 하고 기뻐 만세를 부를 뿐인데 헌병들은 칼로 찍으며 총으로 쏘아서 당장에 이십여 명의 살상을 내었소이다."

인이 검거되었다."[33] '오후 7시까지'라는 서술로 볼 때 근거 자료는 앞에서 본『매일신보』1919년 3월 7일 자 보도인 것 같다. 이와 함께 수안 만세시위의 중요 자료가『三·一運動祕史』에 실려 있는데, 바로 앞에서 본 이경섭과 한병익의 신문조서들이다. 이 중에는 후대에 원본을 찾아볼 수 없는 경성지방법원 예심판사와 이들의 문답이 담긴 신문조서(1919.5.9-5.10)가 포함되어 있다. 앞서 보았듯이 신문조서에서 한병익과 이경섭은 일본 헌병·경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시위상을 말했다.

1966년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韓國獨立運動史(二)』에도 수안군 만세시위는 황해도의 대표적 시위로 언급되었다. "수안같은 곳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일헌병대를 습격하여 일제 측 기록에도 근 30명씩이나 살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격렬상을 示顯하였으므로써 여타부에 앞장선 감이 있다.", "(3월 3일) 아침 일찍부터 개시된 시위는 오후 2시경부터 당지 일헌병주재소에 3차에 걸쳐 쇄도하여 헌병분대장 吉野匡에게 '조선이 독립하였다'고 말하며 동 분대를 조선인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의 무차별 발사로 적어도 27명(즉사 9명, 중상 18명)의 살상자가 발생하였던 것이다."[34] 내용으로 보건대 '獨立運動에 관한 건 제5보'(〈표 1〉의 ④)인 것 같다. 그러면서 중요 자료로 주동자의 판결문이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三·一運動祕史』와『韓國獨立運動史(二)』는 다른 자료와 비교했을 때 시위 시간과 횟수가 부정확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안 만세시위를 소개했다.

1969년 삼일운동 50주년을 맞이하여 동아일보사에서 발간한 기념논문집은 삼일운동 연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다. 수안면 만세시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전환이 이뤄졌다. 천관우는「民衆運動으로 본 三·一運動」에서 전체적으로 삼일운동에서 '중앙지도체'가 표방한 '비폭력 시위' 원칙이 실지에선 "폭력 반, 비폭력 반"으로 귀결되었다고 보며, 폭력시위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① 시위군중의 흥분상태에서 '勢에 乘하여' 자연히 폭력화한 경우, ② 일본 군경의 탄압에 대한 보복 또는 예방을 위하여 폭력으로 임한 경우,

33) 이병헌, 앞의 책, 963면.
34) 國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1966, 343-345면.

③ 처음부터 독립운동의 일 방법으로 폭력을 채택한 경우. 수안면 시위는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시위와 함께 위의 '폭력시위' 중 제3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거론되었다. "관리를 협박하여 일본정부 통치하에 在한 경찰권 행정권의 인수를 강요하는 旨를 결정하고 헌병분대 사무소에 쇄도하여 (…) 동분대의 인도를 강요(3월 3일 수안시위판결문)". 옥상면 시위의 근거 자료도 판결문이다. 이어 그는 일제 측 기록에서 사상자 20명 이상이 나온 시위 20건을 나열했는데, 그 목록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것이 "3월 3일, 수안읍, 死 9 傷 18, 헌병대 습격"이었다.[35] 일본 헌병・경찰이 '발포'의 부득이함을 강조하기 위해 부각한 시위대의 '폭력'이 이제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폭력'으로 전환되었다. 시위대의 '헌병대 인도' 요구는 '경찰권 행정권 인수'로 해석되었다. 이는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을 '내란죄로 몰아가려는 판검사의 주장과 같다.[36] 이로써 '습격'이 격렬함과 치열함의 징표,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해석되는 길이 열렸다.

천관우가 닦아놓은 길은 삼일운동 70주년인 1989년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가 펴낸 『3・1민족해방운동연구』로 이어진다. 이 책은 민중 주체의 전면적 비타협적 투쟁을 '올바른 노선'으로 상정하고 민중의 '폭력투쟁'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 폭력투쟁은 제국주의의 폭압적 지배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고 폭로하는 동시에 외교를 통한 청원이나 자치가 아니라 투쟁을 통한 절대독립 쟁취의식을 표출한 것이었다. 민중은 운동 초기부터 폭력투쟁을 지향했다. 황해도 수안면 시위는 이런 민중 운동의 심화 발전된 사례이다. '공화정치는 대세다, 속히 분대를 양도하라'고 외치며, 헌병대의 접수에 나섰다.[37]

이와 같은 민중 중심의 시각은 아니지만, 지방 중심 또는 지방 완결의 시각에서 삼일운동을 연구한 이정은의 '공세적 시위'론도 천관우의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삼일운동 당시 지역시위가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지역해방

35) 千寬宇, 「民衆運動으로 본 三・一運動」,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661면, 664면
36) 본 논문 3장 3절과 주 61) 참조.
37)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35-36면, 247면, 251면.

형의 격렬한 공세적 시위운동으로 발전하여 일제 식민지 지배 철폐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다가갔다고 본다.[38] 수안면 시위는 이러한 '공세적 시위'의 초기 사례였다. "황해도 수안, 평안남도 안주·강서, 평안북도 선천 등지에서는 관공서에 쇄도, 습격하는 강력한 공세적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수안에서는 헌병대의 철수를 요구했고, 다른 곳에서는 유치인의 구출을 위해서였다. 초기부터 나라가 독립선언을 하였으므로 일제 관헌은 철수하라고 요구한 수안군의 시위는 일제 지배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던 까닭에 일본군의 발포로 9명이 사망하였고 민족대표 재판과정에서도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근거로써 3대 지방 시위운동의 하나로 거론되었다. 따라서 공세적 시위는 단지 일제의 주도자 구금이나 유혈진압에 항의하는 데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초기 시위부터 일제의 철퇴를 요구하는 강력한 정면 도전의 시위운동도 있었던 것이다."[39] 이정은은 수안면 시위에서 '유치인 구출'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아무튼 '수안면 만세시위 = 공세적 시위'란 인식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40]

3. 의문과 만세시위의 재구성

1) 시위 횟수: 한날 '세 차례'의 시위는 계획된 것인가

앞장에서 수안면 만세시위에 관한 당대 기록과 후대 연구를 살펴보았다. 간단히 정리하면 일제의 기록에 쓰인 '습격', '헌병대 인도'가 해방 이후 식민지배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공세적 시위'의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당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비판했듯이 일제의 기록은 발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사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안면 만세시위의 특이한 점은 시위 시간과 횟수다. 보통 만세시위는 약속된 모일 모시에 특정 장소에 모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 삼창 등으로 독립 의지를 공유한 뒤 세를 과시하며 또는 세를 얻기 위해 행진한다. 지역에

38) 이정은, 앞의 책, 28면, 161-164면.
39) 같은 책, 148면.
40) 성주현, 앞의 글.

따라 식민지권력의 핵심인 면사무소나 헌병분대 앞으로 나아가 독립 의사를 천명하기도 한다. 왜 수안면과 부근의 천도교도는 다 모여서 시위를 하지 않고 세 차례 나눠서 했을까. 세 번의 이어지는 시위가 '치열'했다는 증거 같지만, 시위가 나뉘면 그 위력이 분산된다. 지역에 따라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 시위가 있었던 경우는 있으나 수안면 만세시위처럼 동일세력에 의해 한 날 세 차례 시위가 일어난 경우는 드물다. 또 오전 6시는 시위 시간으로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41]

수안면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한 이경섭이 손병희, 이종일 등과 공범으로 경성으로 이송되어 신문을 받는 과정에 그와 관련된 자료로 수안헌병분대와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 검사국이 작성한 천도교 교구장 안봉하와 금융원 김영만에 대한 신문조서 등본도 같이 딸려왔다. 2일 교구실에 모여 '헌병대 점령을 결의하며 그 실행방법은 한청일과 홍석정에 맡기고 수안 각지에 3일에 모이라는 통지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안봉하는 헌병분대에선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흥지청에선 '그렇게 모인 일도 없고 합의도 하지 않았고 통지를 낸 일도 없다'고 답했다. 김영만은 '그런 일이 없다', '기억하지 못한다' 했다.[42] 판결문과 안봉하 김영만의 진술 중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 3월 3일 3차례 시위는 계획된 것일까?

수안면 시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웃한 곡산군 곡산면의 3월 4일 만세시위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43] 3월 1일 밤 수안면에 독립선언서를 전달

41) 시험 삼아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19.2, http://db.history.go.kr/samil (2019.08.18. 검색)을 검토해보자. 삼일운동 시위 1692건 중 '시간' 유형 3개 이상이며 단일 '주체'('일반' 제외)인 경우 4건에 불과하다. '시간' 유형 개수가 곧 시위 횟수가 아니며 시위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에 가까우므로 범위를 좀 넓혀볼 필요가 있다. 시간 유형 2개 이상이며 단일 '주체'('일반' 제외)인 경우도 15건(전체 시위의 0.9%)에 불과하다. 이 중 하나가 수안면 만세시위이다. 또 삼일운동 시위 1692건 중 시위 시간으로 '오전 6시'가 나오는 경우는 단 3건이다. 3월 28일 충남 천안군 입장면 시위(광부 교대 시간 이용), 4월 7일 강원도 이천군 이천면 향교리 천도교도 시위와 수안면 시위이다. 만세시위의 대략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수안면 시위가 드문 예임을 알 수 있다.

42)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5: 三一運動 V』, 國史編纂委員會, 1991b, 30-35면.

43) 이하 3월 4일 곡산군 곡산면 시위에 대해서는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19.2, http://db.history.go.kr/samil(2019.08.18. 검색)의 출처정보들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직접 인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각주를 달았다.

한 이경섭은 그만 발병이나 홍석정에게 남은 독립선언서를 곡산에 전달해 달라 부탁했다. 그는 그날 새벽 3시에 신막역에 내린 뒤 걸어서 서흥에 선언서를 전달하고 해가 진 뒤에야 수안읍에 도착했었다. 홍석정은 2일 오전 3시경 수안면 석교리 자신의 집을 떠나 곡산면 연하리 원형도의 집과 같은 면 송항리 천도교 교구실에 들러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을 말한 뒤 2일 저녁 또는 밤에 다시 수안으로 출발했다. 홍석정이 떠난 뒤 곧 곡산군에선 시위 준비에 들어갔다. 2일 밤 곡산면 송항리 천도교 교구실에서 김희룡은 마을 신도 이재경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바탕으로 4일에 시위할 것 결정했다. 그 사이 교도에게 알리고 '조선독립'이라 쓴 깃발도 만들었다. 4일 50인쯤의 교도가 교구실에 모여 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곡산 읍내로 진입했다. 곡산군 다른 지역도 비슷했다. 곡산면 부근의 운중면, 청계면, 서촌면, 화촌면에서는 3일 논의를 거쳐 4일 각 면의 교리강습소와 전교실 등에 교도들이 모여 '조선독립만세'나 태극기에 '한국독립만세'라 쓴 깃발을 들고 함께 읍내로 행진했다. 이 중 운중면과 화촌면 일부의 행진은 헌병대의 제지 또는 설득으로 도중에 해산되었다. 곡산면에 속속 모인 50-100명의 천도교도가 오전 10시경부터 1시간 반가량 깃발을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했고 독립선언서를 길거리 군중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50-60명이 헌병분대 앞까지 갔다가 대표 7인만 남고 해산하였다. 7인 중 김창현은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 판사가 "헌병분대에 간 것은 헌병을 쫓아내고 분대를 점령할 목적이었던가" 묻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만세를 부르고 있는 곳에 헌병분대장이 와서 장안에서 소동하지 말고 분대로 가자고 말하기 때문에 간 것이다."라 했다.[44]

이경섭은 홍석정에게 독립선언서 배포를 부탁한 뒤 3월 3일 밤에 곡산면 송항리 교구실에 도착해서 다음 날 행진에 앞장섰고 대표 7인 중 1명으로 구속되었다. 그날 헌병분대장이 곡산 교구실에 온 뒤 "전에 보낸 선언서의 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느냐고 누구에게 묻지 않았는가?" 신문하자 "교도 약 30명이 모여 내일(4일) 시위를 준비하며 군내 동지 전부가 곡산면에 집합하여 만세

44)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6: 三一運動 VI』, 國史編纂委員會, 1993, 12면.

를 부른다고 하므로, 선언서의 취지가 철저하게 알려진 것으로 생각되어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45] 홍석정이 이경섭의 말을 잘 전달한 것이다. 추정컨대 군 교구실에서 각 면의 교리강습소와 같은 거점이나 대표자에게 독립선언서를 보내서 교도들에게 취지를 알린 뒤 약속한 날에 기를 들고 읍내로 모여서 함께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외치고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는 것이 대강의 시위 방침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3월 11일 체포된 평안북도 영변군 천도교구장이 경찰에 밝힌 바에 따르면 3월 2일 경성에서 천도교 대도주 박인호가 자신을 비롯한 지역 교구장들에게 말한 지침은 "제1회 독립만세는 이미 어제 끝나고, 제2회 독립만세를 경성 시내에서 부를 계획이다. (…) 제3회째에는 각지의 천도교구실에 모두 통지할 것이니 그날 각 신도는 빠짐없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대소동을 일으켜라", "만약 경찰서원, 군청원 등이 제지한다면 반항하지 말라"였다. '대소동'이란 경찰이 번안한 용어일 거다. 영변교구장이 돌아와 영변 교도들에게 한 지시는 제3회째 통지를 받았을 때 "교구실에서 각 면의 전교사에게 통지하고, 전교사는 각 신도에게 통지해라. 그 통지를 받았을 때 각 교도는 교구실에 모여서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하라"였다.[46] 영변교구장이 대도주의 지시를 받을 때 곡산교구장 이정석도 같이 있었다. 곡산 시위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이경섭 외에도 곡산교구장을 통해 시위 방침이 지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 곡산면 시위는 천도교 대도주가 말한 방침대로 전개되었다. 군내 천도교 조직망을 통해 선언서를 배포하고 선전한 뒤 읍내에 모여 시위하되 권력에 '반항'하지 않았다. 이경섭이 3월 1일 밤 수안교구장 등에 독립선언서를 주면서 말한 시위 지침도 유사했을 것이다. 곡산군과 달리 수안군에 "헌병대를 점령하라"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수안군 천도교인이 헌병대와 충돌한 것은 뭔가 곡산군과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

수안군 천도교 교구실도 애초 시위는 곡산군과 비슷하게 계획했던 것 같다.[47] 이경섭이 3월 1일 밤 독립선언서와 함께 경성의 소식과 중앙의 지시를

45)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1: 三一運動 I』, 國史編纂委員會, 1990a, 200면.
46) 같은 책, 208-211면.
47) 이하 3월 3일 수안군 수안면 시위에 대해서는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19.2, http://db.history.go.kr/samil(2019.08.18. 검색)의 출처정보들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직접 인

전할 때 안봉하, 김영만, 나찬흥, 홍순걸(전 교구장), 홍석정, 한청일 등이 같이 있었다 한다. 아마 이때 대강의 지침이 전해지고 결정되었을 것이다. 같은 날 밤 금융원 나찬흥은 연암면에서 온 奉訓 한국영에게 독립선언서 2매를 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회람시키라", "교구실에서 통지가 가면 교도를 인솔하고 수안으로 나오라" 했다.[48] 연암면은 수안면으로부터 서북쪽에 있는데, 중심지 율리에서 수안면의 읍내까지 직선거리로 20km, 50리가 넘지만, 그 사이는 '의정부-평양' 간 이등도로가 닦여서 비교적 길이 양호한 편이다. 그래도 3월 3일 11시경 2차 시위에 참여한 연암면 사람들은 밤새 걸어야 했다. 아마 연암면이 읍내 당일치기 시위가 가능한 한계선이었을 것이며 더 먼 곳이라면 1박을 감당해야 한다. 연안면과 수안읍 사이에 있는 대천면과 같이 수안읍에 더 가까운 면들도 교도를 모아 읍으로 들어오게 하여 함께 시위할 계획이었던 것 같다. 곡산면 시위에 참여했던 교인도 주로 가까운 면에서 온 자들이었다. 그런데 수안군에는 읍과 거리가 연암면과 비슷하거나 더 멀면서 교통이 불편한 면들도 꽤 있었다. 이런 경우는 그곳에서 각자 시위하게 할 방침이었던 것 같다. 실제 연암면의 동쪽에 위치한 수구면 석달리에서는 3월 7일 장날을 맞이하여 천도교들이 만세시위를 벌였다.[49] 주동자인 그곳 천도교 전도사 이승필(혹은 이승욱)은 3월 1일 수집한 성미를 내러 수안 교구실에 갔다가 다른 전도사들과 함께 금융원 나찬흥의 지시를 받았다. 나찬흥은 독립선언서를 읽어주고 경성의 독립만세 시위 소식을 전하며 "너희도 각각 마을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선언서를 교부하여 만세를 부르게 하라" 했다.[50] 그는 지시받은 대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려하여 7일 기를 세우고 약 30-40명의 천도교도가 수천 명의 군중 가운데서 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석달헌병주재소 습격 계획'이 있었으나 '미연 방지'했다고 기록했다.[51]

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각주를 달았다.

48) 京城覆審法院, 「1920刑控528・529・530號 判決(安鳳河 등 68인)」, 1920.11.22.

49) 3월 7일 수안군 수구면 시위에 대해서는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19.2, http://db.history.go.kr/samil(2019.08.18. 검색) 참조.

50) 京城覆審法院, 「1920刑控528・529・530號 判決(安鳳河 등 68인)」, 1920.11.22.

그러면 왜 수안면은 곡산면처럼 면과 그 부근 면 사람들이 읍에 모여서 함께 시위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앞에서 보았듯이 곡산면과 달리 수안면에서는 시위가 있기 전날 헌병대가 교구실을 수색하여 독립선언서 2장을 찾아내고 교구실에 있던 교구장과 간부들을 연행했다. 때론 기록이 숨기거나 빠뜨리는 것에 진실이 있을 때가 있다. 1920년 고등법원 예심 종결서에도, 경성지방법원의 판결문 공소사실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시위 당시 요구사항이 마지막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에 나온다. 그 판결문에도 '범죄사실' 부분에 나오지 않는다. 그 뒤 판사가 증거로 인용하는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에 나온다. 앞에서 보았듯이 증인 수안헌병분대장 野呂匡, 헌병 오장 下川忠一은 시위대에게서 "구속자를 석방하라"라는 말을 들었다. 판검사가 보기에 '내란죄' 또는 '보안법' 위반을 적용하는 데 '구속자 석방'은 중요하지 않거나 방해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천도교도에게 교구장 구속은 놀라운 일이며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공동체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였다. 수안면 남쪽 대평면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최명백은 연락을 받고 시위에 나온 게 아니라 '교구장 등이 연행되었다기에 그 동정을 살피고자' 3일 수안읍에 나왔다가 홍석정 등이 무리 지어 가고 있어 따라가 12시 반-1시경 '3차 시위'에 참여했다 붙잡혔다.[52]

이렇게 볼 때 수안면 만세시위 중 오전 6시경에 시작된 '1차 시위'는 일본 측의 표현처럼 '습격'이나 '음습'이 아니라 '본 시위'를 하기 전에 상황을 탐색하기 위한 선발대의 '사전 시위'에 가까운 것 같다. '1차 시위' 주도자는 수안면에 거주하며 천도교 전 현직 간부였다(이영철_천도교 교구실 소사, 홍석정_전 교구장, 한청일_전교사. 모두 수안면 석교리 거주). 관련 피의자도 수안면 석교리 거주자가 많았다(〈부표 2〉 참조). 이른 시간에 집합 가능한 자들이 모인 것이다. 시위 상황도 보면 이후에 비해 '평화적'이었다. 일본 측이나 외국인 선교사 측의 자료에 의하면 시위대는 '헌병대 인도' 등을 요구했고,

51) 黃海道長官 → 朝鮮總督, 「不穩事件ニ關スル報告」, 1919.3.18; 兒島惣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 → 山梨半造(陸軍次官), 「朝鮮騷擾事件一覽表ニ關スル件」, 1919.10.2, 56면.

52) 京城覆審法院, 「1920刑控528・529・530號 判決(安鳳河 등 68인)」, 1920.11.22.

헌병대는 본부에 문의해보겠다는 식으로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대표 2명을 남겨두고 일단 물러가게 했다(〈표 1, 2, 3〉 참조). '대표'를 남기고 떠나는 '습격'이 있을까? '1차 시위' 때 시위대 중 누군가가 헌병분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단 교구실로 돌아가겠지만, 이 지방에서 [천도교도가] 계속 교구실로 모여들고 있으니 이들의 인원수는 계속 불어나 배가 되고 수천 배, 수만 배가 되어 분대의 인도를 요구할 것인즉 속히 인도함이 좋을 것 같다."[53] 이는 조만간 다수가 모이면 본격적으로 시위를 하겠다는 예고이고 그러니 빨리 요구사항을 들어주라는 압박이었다.

2) 발포 계기: '폭동화' 또는 돌변?

왜 헌병대는 '1차 시위' 때와 달리 '2차 시위', '3차 시위' 때 발포했던가? 일본 헌병・경찰 측은 시위대가 '해산 명령을 듣지 않고 함성 지르며 난입하려 했다'고 한다. 판결문에도 '헌병분대로 몰려가 '조선독립만세' 외치고 헌병분대의 퇴거를 요구하면서 사무실로 돌진하려 했다'고 나와 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1차 시위'와 달리 시위가 '폭동화' 하여 발포한 것이다. 외국인 선교사 측 자료에 따르면 2차 시위 때도 1차 시위와 같은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헌병이 발포했다. 돌변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경섭은 어린아이가 헌병분대 유리창을 깨는 실수를 하여 헌병이 발포했다고 했다. 우연에 의해 발포가 이루어진 걸까. 그런데 이 말을 전한 한병익은 '2차 시위' 때 현장에 없었다.

기존 연구에서 이용되지 않았던 선교사 측 사료를 검토해보자. 1920년경 캐나다 오타와 기독교청년회 사무총장이 세브란스 의전의 허버트 오언스(Hurbert T. Owens, 1882-1958)의 부탁을 받아 스위스의 국제연맹에 제출(1920년 5월 28일 접수)한 한국독립운동 관련 서류 22건 중 하나가 「부상자들이 본 1919년 3월 3일 수안골 총격(Wound Men's Version of the Suan Kol Shooting of March 3 - 1919.)」이다.[54] 내용으로 보건대 부상자들을

53) 京城覆審法院, 「1920刑控528・529・530號 判決(安鳳河 등 68인)」, 1920.11.22.
54) 국가보훈처 편,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 1: 國際聯盟篇』, 國家報勳處, 1991, 81면.

치료했던 수안군 대천면 남정리(楠亭, Tulmichang)에 있는 수안 광산회사 병원 근무자가 작성한 것으로,『한국의 상황The Korean Situation』의 원자료 일부인 것 같다. 시위 참여 부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것인데, 시위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길지만 인용해보겠다.

> 이 지역의 천도교 지도자는 안봉하인데, 그는 부상하지 않고 체포되었다. 그는 3월 1일 서울 지도부로부터 메시지 혹은 선언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조선은 이제 독립이 되니 천도교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조선이 이제 독립되었음을 선언하고 어떤 우체국, 경찰서, 헌병대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왕의 인산일 3월 3일에 그들은 질서 있게 무장하지 않은 채로 헌병대로 행진하여 조선은 이제 독립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헌병대를 인계하고(hand over) 일본의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헌병대장이 그들의 방문목적을 알고 그들에게 마을의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동안 서울에 문의해서 경찰서를 천도교에 인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시위대의 대표 2, 3명을 남게 했다.
>
> 이 시위대가 마을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일본 헌병대원이 와서 그들에게 1시간 이내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쏴버리겠다고 통지했다. 그동안 대략 비슷한 세력의 또 다른 시위대가 헌병대에 도착했다. 두 번째 시위대는 또 다른 지역에서 왔고 그들의 존재를 첫 번째 시위대는 몰랐다. 그리고 헌병대원들이 이제 매우 화가 났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두 번째 시위대도 명령대로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와서 똑같이 헌병대 앞에서 만세를 외치는 첫 번째 시위대와 같은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 이 두 번째 시위대의 리더는 26세의 김창순이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화나서 해산하라고 명령하는 헌병대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헌병대 구내로 들어갔다. '만세'를 외치는 것 외에는 어떤 무질서의 징후도 없었지만, 헌병대장은 계단 끝으로 나아가던 시위자[김창순]를 쏘았다. 그러자 그는 계단 끝으로 나아가 그의 옷을 풀어헤치면서 헌병에게 자신을 다시 쏘라고 하면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헌병대장이 검으로 그의 목을 쳤다 (…) 처음에 몇몇 사람이 말했던 것과 달리 그를 참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목의 반을 베었고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헌병대 베란다는 몇몇 일본인 헌병대원, 2-3명의 조선인 헌병대원, 마을에서 동원된 몇몇 일본인 상인과 사냥꾼들이 지켰고, 사격이 끝난 뒤 베란다 위에는 군용 소총들, 회전식 연발 권총, 엽총, 산탄총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다.
>
> 김창순을 따라왔던 자들은 그때 헌병대의 총격에 대략 3명이 죽고 8-9명이 부

> 상했다. 첫 번째 시위대는 헌병대에서 온 일본인 헌병이 마을로 해산하고 1시간 내로 떠나지 않으면 쏘겠다는 명령을 들은 후, 이 총격을 듣고 경찰서로 몰려갔다. 헌병대 구내 입구는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인 헌병이 지키고 있었고 밧줄이 쳐져 있었다. 그 헌병이 시위대에게 밧줄을 넘지 말라고 했지만, 조선인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를 옆으로 밀고 밧줄을 잘라서 뜰로 들어갔고 총격을 받았다. 조선인 중 뜰 안에 있던 몇몇은 문을 통해 도망갔는데, 보초를 서면서 첫 번째 총격에 참여하지 않았던 헌병대원들이 이제 담장 바깥에서 그들을 쏘았다. (…) 한 목격자와 한 관리(government employee)는 말한다. 시위자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어떤 막대기도 돌도 사용하지 않았다.[55]

부상자들의 말을 정리한 문서에 따르면 '1차 시위' 이후 헌병이 교구실로 가서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명령 협박했다.[56] 다른 지역에서 온 2차 시위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바로 헌병대로 몰려갔다. 헌병대는 이를 명령을 거부한 1차 시위대로 오인하고 발포했다. '3차 시위'는 별도의 시위가 아니라 당시 교구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갔다가 총격을 받은 것이다.

이 목격담이 성립하려면 '1차'와 '2차'의 시위대가 다른 집단이고 1차 시위와 2차 시위 사이에 서로 정보 교환이 없어야 한다. 양쪽 참가자가 달랐다는 점은 일본 측 기록인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보았듯이 1차 시위 주도자와 참가자가 대체로 수안면 교구실과 관련 깊은 수안면 석교리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면 2차 시위 주도자는 수안면 수촌리의 이동욱(전교사)과 대천면 시리원리의 오관옥이었으며, 관련 피의자도 대부분 수안면 수촌리와 자의리, 대천면 거주자가 많았다. 수안군 천도교 교구실이 있는 수안면 석교리에서 북서쪽 지역의 천도교도였다(〈부표 2〉 참조). 물론 이상의 분석은 헌병에 붙잡힌 자만의 정보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목격담에 2차 시위 지도자로 나오는 김창진은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에도 2차 시위 참여자 2인(수안면 자의리)에게 시위 참여를 권했던 자로 나온다.[57]

---

55) 같은 책, 87-88면.

56) 1차 시위'와 '2차 시위' 사이에 헌병대로부터 통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한병익도 진술했다. 본 논문 2장 3절 참조.

57) 京城覆審法院, 「1920刑控528・529・530 判決(安鳳河 등 68인)」, 1920.11.22.

그러면 2차 시위대는 교구실에 머물고 있던 1차 시위대에 통보된 헌병대의 명령 '해산 아니면 발포'를 알지 못했던가? 이는 2차 시위대가 교구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병대로 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판결문 자료인 〈부표 2〉를 보면 2차 시위 참가 피고인 31명(오관옥 포함) 중 수안면 거주자가 15명인데, 이 중 10명이 수안면 서쪽에 있는 수촌리, 자의리의 거주자이다. 이쪽에서 수안면 동쪽 천도교 교구실(석교리)을 가려면 수안면 서쪽 헌병분대(창동 또는 용담리)를 거친다. 대천면 14명과 연암면 2명도 '의정부-평양' 간 국도를 따라 수안면 동쪽에서 읍내로 들어갈 수도 있으나 산을 넘어간다면 서쪽에서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이들의 신문조서가 남아있지 않아 확증하기 어렵지만, 2차 시위 참가자들이 교구실보다 헌병대에 먼저 갔을 가능성이 있다.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들에게 연락이 간 것은 3월 2일 밤, 3일 아침이었다.[58] 시위 참여를 통지받으면서 천도교 지도부가 헌병분대에 구속된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목격담의 '3차 시위'가 1차 시위대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은 판결문에 의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르다. '3차 시위' 주도자는 1차 시위대 때와 같이 홍석정, 한청일이었다. 다만 참여자는 그 주소가 수안면 석교리도 있지만, 대천면, 오동면이 다수였다. '1차 시위' 이후 속속 다른 면에서 교도들이 수안면 교구실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총소리가 나자 1차 시위 지도자가 당시 교구실로 모여든 여러 면의 천도교도과 함께 헌병대로 달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밧줄', '차단선'은 2차 시위 때 사상자를 은폐하거나 수습하기 위해 발포 현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3차 시위대는 자신의 동료 신도가 총을 맞자 분노와 흥분으로 차단선을 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차 시위'는 발포에 대한 '항의 시위'라 할 수 있다.

「부상자들이 본 1919년 3월 3일 수안골 총격」은 시위와 총격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 목격담이고 1차와 2차 시위의 차이, 발포 이유에 대해 개연성 있는 설명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59] 또 기본적으로

58) 京城覆審法院, 「1920刑控528・529・530 判決(安鳳河 등 68인)」, 1920.11.22.
59) 대부분의 관련 논저는 일본 측 기록이 말하는 시위대의 '폭동화'(난입)와 선교사 측 기록이 말

'만행'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리된 것이긴 하지만 발포 현장을 잘 전해주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헌병대만이 아니라 상인, 사냥꾼과 같은 일본 민간인이 발포에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1차 시위' 때 헌병대가 별다른 충돌 없이 시위대를 돌려보낸 것은 이런 무장력을 갖추기 위함이었던가. 반대로 그들 앞에 선 시위자들에게 '습격'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어떤 막대기나 돌도 없었다고 한다. 한편 곡산면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헌병의 해산 명령을 받아들였던 것은 전날(3월 3일) 수안면 시위의 이러한 '발포'와 '사망'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3) 요구사항: 헌병대 '접수'를 기도했는가

수안면 시위대가 외쳤다는 구호도 특이하다. '조선은 독립하였다.', '공화정치는 세계의 대세이다', '헌병분대를 인도(引渡)하라'.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에 인용된 검사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피의자 대부분이 세 구호를 세트로 외치거나 들었다. 그런데 '헌병분대를 인도하라'는 구호는 당시 다른 시위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호였다. 앞의 부상자 목격담을 정리한 문서

하는 헌병대의 '돌변'을 결합하여 서술한다. '폭동화'는 격렬하고 치열한 운동으로 바꾸어 서술된다. 이 과정에서 모호한 점을 메우기 위해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창작'이 이뤄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1971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펴낸 『독립운동사 2: 3.1운동사(상)』에 나오는 '헌병대의 서약'이다. 1차 시위에서 헌병대장이 "서울 본부에서 연락이 있는 대로 곧 물러나가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했고 시위대는 천도교 교구실로 돌아가 승리의 개가를 올렸다. 이 책에 따르면 2차 시위는 이렇게 시작됐다. "애국의 대열은 아침보다 몇 배 더 증대되었으며 읍내는 온통 '독립만세'의 함성 속에 들어갔다. 흥분한 군중들은 헌병대를 쫓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나섰다." 그리고 "정의의 대열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당황하던 적 헌병들은 그만 최후 발악으로 무차별 사격을 퍼부으니 애국 동포들은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2: 3.1운동사(상)』,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a, 262-267면. '서약'은 1995년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가 펴낸 『독립운동총서-2: 3·1운동』에선 도장까지 찍힌 '항복서'로 발전했고 '승리의 개가'는 '잔치'로 바뀌었다, 2차 시위에서 발포한 것은 굴욕감을 이기지 못한 헌병분대장이 "항복서는 먼젓번에 써 주었으면 되었지 왜 또 쓰느냐"며 버티다 위급해지자 결사적 각오로 발포했다.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기획, 『독립운동총서-2: 3·1운동』, (주)민문고, 1995, 115-116면. '항복서' 존재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안봉하 등 수안군 천도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구속되어 있는데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잔치를 벌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1차 시위나 2차 시위의 시위자 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차 시위에 비해 2차 시위가 크게 가열된 상황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에도 시위대 구호로 '인도하라(hand over)가 나오긴 한다. 이 문서를 포함하여 선교사 측 자료들을 보면 '조선이 독립되었으니 또는 독립을 선언했으니 헌병은 떠나고 헌병대는 우리에게 넘기라'는 맥락에서 '헌병대를 인도하라'는 구호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 구호를 일제 판검사는 시위대가 헌병대를 접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는 3월 2일 모의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수안면 시위를 연구한 조규태도 이상했던지 헌병대 접수까지 논의되었는지는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 했다.[60] 또 '공화정치는 세계 대세'도 이상하다. 당시 민중이 얼마나 공화정치를 이해했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이 구호는 당시 다른 시위에서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조선이 독립되었으니 물러가라면 그만이지 헌병대원에게 정치의 대세까지 외칠 필요가 있을까? 이 구호들은 시위가 '내란죄'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일본인의 관점에서 '조선독립'은 물론 '공화정'도 천황제를 부정하는 '국헌 문란'이다. '헌병대 접수'는 이런 목적 수행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수안면 시위를 내란죄로 몰아가기 위한 이러한 논리는 다음 1919년 10월 29일 고등법원 예심판사 楠常藏이 이승훈에게 한 신문에서 잘 드러난다.

> 문: 그대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 (…) 금년 3월 3일에 黃海道 遂安郡 遂安面에서 발발한 폭동, 곧 3월 2일에 그 면 石橋里 遂安 천도교구실에서 安鳳河가 주모자가 되어 수십 명의 천도교도 등과 서로 꾀하여 천도교도 등을 규합하여 다음 3월 3일에 遂安헌병분대, 그 군청 등을 습격하여 다수의 위세를 나타내고 관리를 협박하여 일본정부의 통치 밑에 있는 경찰권・행정권의 인도를 강요하여 일본제국주권의 행사를 폐파하게 함으로써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을 결정하고, 그 획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洪錫禎, 韓淸一 등이 주로 그것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획책에 바탕하여 3월 3일에 그 遂安郡 遂安面, 大千面, 梧洞面, 延岩面, 公浦面의 천도교도 등이 오전 6시경에 약 1백 3・40명, 오전 11시경에 약 1백 명, 오후 1시경에 약 1백 5・60명이 遂安 헌병분대로 몰려가서 다수의 위력을 나타내고 협박하여 그 분대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 및 平安北道 義州郡 玉尙面에서 있는 폭동, 곧 朴擎

60) 조규태, 앞의 글, 126면.

得, 金時恒, 金時赫 등이 서로 꾀하여 피고인 등이 孫秉熙 등과 공모하여 배포한 독립선언서의 취지에 따라 조선을 일본제국의 통치에서 이탈시켜 새로 그 지역에 독립국을 건설하는 수단으로 다중을 규합하고 폭력으로써 제국의 통치에 속한 면행정을 철폐하고 그것에 대신할 자치민단을 조직할 것을 기도하여 대정 8년 4월 2일에 면민 약 3천 명을 규합하고 수괴자 金時赫, 金時恒의 기획에 바탕하여 朴擊得은 솔선하여 그 군중을 지휘하면서 玉尙面사무소를 습격하고 폭행 협박을 하여 마침내 그 면사무소에 비치된 공부 7책 및 현금 1백 93원 45전을 압수하는 등의 폭행을 하고, 이후 약 수십 일에 걸쳐 그 사무소를 폐철하기에 이른 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孫秉熙 등과 공모하여 발표한 독립선언서에 자극을 받은 결과로 야기된 것이라는 것 (…)

답: 그러한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우리가 배포한 독립선언서에 의하여 그런 폭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폭동을 한 사람들이 우매한 결과로 우리가 관지할 바는 아니다.[61](밑줄은 인용자가 표시)

수안면 시위에 나온 '헌병분대 인도'는 '경찰권 행정권 인도' 강요로 해석되었고, 이는 '일본제국의 주권행사를 폐하고 조선독립을 달성하려는 폭동이었다. 그런데 같이 '내란죄'로 고등법원 예심에 회부된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시위의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혐의가 있었다. 위의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주동자 박경득이 '조선이 독립하면 자치민단을 조직하여 면사무소를 폐지할 것'이라며 장부 7권과 공금 193여 원을 강탈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시위가 '내란죄'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목적 수행이다. 그러나 경성복심법원의 판결에서 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죄가 인정되지 않았다.[62] 수안면 만세시위의 경우 경성복심법원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

61) 國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1990b, 174면.

62) 경성복심법원, 「1920刑控524號 判決(朴擊得)」, 1920.10.30. "피고 박경득이 군중이 전시(前示) 소요를 하는데 면서기 최영균 및 기타 면직원에게 '조선은 독립할 것이니 면사무의 집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혹은 '조선은 독립하면 자치민단을 조직하여 일본 관헌의 지휘를 받고있는 면사무소를 폐지할 것이니 면사무소 비품인 공부(公簿) 및 공금을 제공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인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서 면직원들로 하여금 공부 7책 및 공금 193원 15전을 내놓게 하여 이를 강탈하고, 또 군중의 일부가 면사무소 숙직실을 침입할 때 그 지휘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으나 이상은 판시(判示) 소요죄와 1개의 행위로서 기소된 것이라 인정되므로 특별히 이 점에 대해 무죄 언도를 하지 않는다." 의주군 옥상면 사건 등 당시 소위 '자치' 시도로 운위되던 만세시위 사건에 대한 사료 비판은 정병욱,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와 사료 비판」, 『역사의 창』 2019년 상반기 통권 48호, 국사편찬위원회, 2019 참조.

호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헌병대 인도'를 '헌병대 접수', '경찰권 행정권 인도'로 해석하여 '내란죄'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이미 고등법원 예심에서 좌절되었다.

4. 결론: '구속자 석방'의 의미

1919년 3월 3일 황해도 수안군의 천도교도가 일으킨 수안면 만세시위는 '헌병대 인도'를 요구하며 하루에 세 번, 총격을 무릅쓰고 격렬하게 시위한 '공세적 시위'의 대표적 사례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러한 기존 역사상의 상당 부분이 일본 헌병이 발포를 합리화하고 조선총독부 일부 판검사가 '내란죄'를 적용하기 위해 쓴 용어('습격', '폭동' 등)와 해석(헌병대 '접수' 기도)을 사료 비판 없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관점만 바꾸어 원용함으로써 구성된 것임을 주장했다. 시위 횟수, 발포 계기, 요구사항에 대해 기존의 관행적 이해에서 벗어나 합리적 의심을 통해 새로운 역사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안면 만세시위 이해의 관건은 '1차'와 '2차'의 시위대가 다른 집단이었고 1차 시위와 2차 시위 사이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 험한 산골이 많은 수안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수가 시간을 맞추어 결집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

수안군 천도교도의 시위가 '습격', '공세적 시위'가 아니라고 해서 삼일운동 당시 격렬한 시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수안면 만세시위의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것도 아니다. 보통 '공세적 시위'론에서 간과하는 시위대의 요구사항 '구속자 석방'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삼일운동 초기 시위에서 발포가 이뤄지고 많은 희생자가 나온 시위는 평남의 중화군 상원면, 대동군 금제면·강서군 반석면, 맹산군 맹산면과 같이 시위대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거나 그 구출을 목표로 헌병대, 경찰서로 쇄도한 경우가 많았다. 종전에 이런 부분은 독립운동이란 대의 속에 잘 드러내지 않았으나 당시 식민지민의 처지에서 새롭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라진 상황에서 식민지 피지배민이 그 국가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 것 중 하

나가 종교공동체였다. 그런 종교공동체의 지도자와 동료가 식민지권력에 의해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단 종교공동체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에서도 '구속자 석방'을 외친 시위가 많았다. 3월 23일 전북 임실군 둔남면 만세시위처럼 실제 구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구속자 석방' 요구도 식민지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부정이다. 그 바탕에는 독립선언과 만세시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새로 찾은 한 수안면 만세시위자의 의연한 모습을 전하며 글을 맺겠다.

> 3월 7일 헌병은 그들[시위후 구속된 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했다. 오직 두 사람만이 걸을 수 있었다. 그중 1명은 오른팔이 박살 났는데 헌병대를 떠나다 문 경비를 서는 일본인 헌병대원에게 제지당했다. 이 경비원은 자신에게 인사를 할 때까지 그 사람의 통과를 막았다. 그는 다시 헌병대로 돌아가 경비원에게 인사하는 법을 교육받았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다. 그는 2시간 더 억류되고 나서야 풀려났다. 통과하면서 그는 경비원에게 끝까지 인사하지 않았다.63)

63) 국가보훈처 편, 앞의 책, 90면.

■ 〈부표 1〉 삼일운동 각 사건 중 '내란죄'로 고등법원에 예심 청구된 사례[64]

피의자 명	일시/지역/주요 활동	일시/판결 법원/주요 판결 내용(사건번호)
손병희 등 47/48/48/48인	1919.3.1- 경성 등 독립선언 및 선언서 배포	1919.8.1./경성지방법원 예심/내란죄, 관할 변경 요구 1920.3.22./고등법원 예심/내란죄 아님, 경성지방법원 관할(1919特豫1・5) 1920.8.9./경성지방법원/공소 불수리不受理(1920地公刑398・399) 1920.10.30./경성복심법원/원 판결 취소, 양형(1920刑控522・523)
김현묵 등 52/27/27/27인	1919.4.3. 경기 수원군 장안・우정면 시위	1919.8.7./경성지방법원 예심/일부 내란죄로 관할 변경 요구, 일부 면소 또는 방면 1920.3.22./고등법원 예심/내란죄 아님, 경성지방법원 관할(1919特豫2) 1920.8.9./경성지방법원/공소 불수리(1920刑公400) 1920.12.9./경성복심법원/원 판결 취소, 양형(1920刑控527)
최은식 등 127/127/125/125인	1919.4.1-2 경기 안성군 원곡・양성면 시위	1919.8.8./경성지방법원 예심/내란죄, 관할 변경 요구 1920.3.22./고등법원 예심/내란죄 아님, 경성지방법원 관할(1919特豫3) 1920.8.10./경성지방법원/공소 불수리(1920刑公401) 1921.1.22./경성복심법원/원 판결 취소, 양형(1920刑控531)
박경득	1919.4.2. 평북 의주군 옥상면 시위	1920.3.22./고등법원 예심/내란죄 아님, 경성지방법원 관할(1919特豫4) 1920.8.7./경성지방법원/공소 불수리(1920刑公405) 1920.10.30./경성복심법원/원 판결 취소, 양형(1920刑控524)
안봉하 등 71/70/68인	1919.3.3. 황해 수안군 수안면 시위	1920.3.22./고등법원 예심/내란죄 아님, 경성지방법원 관할(1919特豫6・7・10) 1920.8.7./경성지방법원/공소 불수리(1919刑公402) 1920.11.22./경성복심법원/원 판결 취소, 양형(1920刑控528・529・530)
윤상태 등 27/30인	대구 독립단(중앙총부) 조직 활동	1919.9.23./대구지법 예심/내란죄, 관할 변경 1920.3.22./고등법원 예심/내란죄 아님, 윤상태 등 20인 면소방면 또는 면소(1918特豫8・9)
권영대 등 10인/윤상태 등 30인/변상대 등 10/10인	1919.4.3. 경남 창원군 진전・진북・진동면 시위	1919.11.6./부산지법 마산지청/내란죄, 관할 변경 요구(1919刑公 117) 1920.3.22./고등법원 예심/내란죄 아님, 권영대 등 10인 경성지방법원 관할(1918特豫8・9)(위와 병합) 1920.8.7./경성지방법원/공소 불수리(1920刑公406) 1920.10.30./경성복심법원/원 판결 취소, 양형 결정(1920刑控525・526)
이정화 등 20인	1919.3-4. 평북 강계군, 자성군, 후창군 자금 모집	1920.4.30./고등법원 예심/내란죄 아님, 일부 평양지방법원 관할, 일부 면소(1919特豫11)

64) 「독립운동판결문」,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2019.08.18 검색). *이외에도 조선총독부 검사 측이 '내란죄' 적용을 요구한 단독 사건으로 '개성 허내삼 등의 시위'가 있다(최종 기각). 다만 이 사건은 고등법원 예심을 거친 경우가 아니며 위 사건들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 〈부표 2〉 수안면 만세시위 피고인[65]

이름	주소		직업	天道敎 敎區內 지위	나이	혐의					연락·선동	형량/사망
	면	리				모의	1차 시위	2차 시위	3차 시위	참여 시도		
안봉하安鳳河	遂安面	石橋里	敎區長	左同	65	○						2년
김영만金永萬	公浦面	馬山里	짚신장수	傳導師, 前교구장*	57	○					한청일 홍석정	2년
나찬홍羅燦洪	수안면	석교리	농업	金融員	48	○						1년6월
최용식崔鎔植	수안면	석교리	농업	共宣員*	51	○						1년3월
김형선金炯宣	道所面	金化里	농업	前전도사, 前교구장*	66	○						1년3월
이달하李達河	延岩面	寶田里	한문교사		65	○						1년3월
나용일羅龍日	연암면	栗里	한문교사		44	○					안봉하	1년3월
장성도張聖道	수안면	석교리	농업	前전도사, 전교사*	50	○						1년3월
안창식安昌植	수안면	석교리	농업		35	○						1년3월
홍길재洪吉載	수안면	석교리	농업		22	○						1년3월
이윤식李潤植	水口面	石達里	농업		59	○						1년3월
이응호李應浩	수안면	석교리	한문교사		29	○						1년3월
홍두익洪斗益	수안면	석교리	농업		22	○						1년
홍두옥洪斗玉	수안면	석교리	농업		39	○	○				홍,한	2년
이영철李永喆	수안면	석교리	교구실소사	좌동	36	○	○				한,홍	2년6월
강국보康國甫	大千面	楠亭里	농업	전도사	49		○				한청일	1년3월
최양봉崔陽鳳	대천면	社創里	자유노동		39		○				홍석정	1년3월
차제남車濟南	대천면	사창리	馬夫		71		○				한,홍	1년3월
김응하金應河	수안면	석교리	농업	前교구장*	63		○					1년3월
유광선柳光善	수안면	석교리	농업		43		○		○*			1년3월
김태혁金泰赫	수안면	석교리	농업		38		○		○*		홍,한	1년3월
최석구崔錫龜	수안면	석교리	농업	전 금융원*	57		○					1년3월
김응도金應道	수안면	創後里	농업	전교사*	54		○				홍석정	1년3월
한진석韓眞錫	수안면	창후리	농업		42		○*	○			오관옥	1년3월
박이봉朴利鳳	수안면	석교리	머슴		65		○	○**			한청일	1년3월
이재관李在觀	대천면	柴里院	농업	전교사*	53			○			홍석정	1년3월
이동욱李東郁	수안면	秀村里	농업	전교사	31			○			홍,오	2년
백수화白受和	수안면	수촌리	농업		64			○			오관옥	1년3월
최석구崔錫九	수안면	수촌리	농업		52			○				(옥중사망)
김문상金文祥	수안면	慈儀里	농업		44			○			김창순	1년3월
이채룡李彩龍	수안면	자의리	농업		40			○			이동욱	1년3월
전창오田昌五	수안면	자의리	농업		52			○			김창순	1년3월
이진국李鎭國	대천면	사창리	농업		23			○			오관옥	1년3월
김용수金龍洙	수안면	창후리	농업		50			○			김흥국	1년3월
용계홍龍桂弘	대천면	上垈里	농업		64			○			이동욱, 오	1년3월
김원걸金元杰	대천면	下垈里	농업		31			○			오관옥	1년3월
정달명鄭達明	대천면	秀峙里	농업		29			○			오관옥	1년3월
유양진柳良鎭	대천면	수치리	농업		46			○			오관옥	1년3월
이균형李均瀅	대천면	暢谷里	농업		25			○				1심후 소실
정두선鄭斗璿	대천면	창곡리	농업		38			○			오관옥	1년3월
박창순朴昌淳	대천면	창곡리	농업		43			○			오관옥	1년3월

김건영金健榮	대천면	창곡리	농업		26			○			오관옥	1년3월
김지섭金智涉	대천면	시리원	농업		41			○			오관옥	1년3월
김정만金貞萬	연암면	율리	대장쟁이		47			○			오관옥	1년3월
양석두梁石斗	연암면	율리	농업		63				○		오관옥	1년3월
이의선李義善	연암면	율리	농업		20			○			오관옥	1년
김기홍金基弘	수안면	수촌리	농업		48			○			오관옥	1년3월
이종식李宗植	수안면	석교리	농업		44			○			홍석정	1년3월
이대인李臺仁*	대천면	시리원	농업		54			○			오관옥	1년3월
박진화朴鎭化	수안면	수촌리	농업		32			○			오관옥	1년3월
김희덕金熙德	수안면	蘇村里	농업		32				○		홍석정	1년3월
서상린徐相潾	수안면	자의리	농업		19			○			오관옥	1년
최응기崔應基	수안면	수촌리	농업		33			○			이동욱	1년3월
정진하鄭鎭河	대천면	수치리	농업		59			○			오관옥	1년3월
정익순鄭益淳	수안면	玉峴里	농업		29			○			한청일	1년3월
정이언鄭理彦	대천면	남정리	나무장수		55				○		홍석정	1년3월
하운택河雲澤	대천면	상대리	돗자리제조		44				○			1심후 소실
이치제李致濟	梧洞面	葛峴里	농업		56				○		한청일	1년3월
최명백崔明白	大坪面	下鳥里	농업		45				○		홍석정	1년6월
강몽락姜夢洛	대천면	남정리	연초상		48				○		홍석정	1년6월
박정훈朴貞薰	대천면	남정리	잡화상		52				○		김영선	1년3월
이종섭李宗燮	대천면	남정리	한문교사		61				○		홍석정	1년3월
김병령金炳領	대천면	남정리	농업		42				○		홍석정	1년6월
양계은梁啓殷	연암면	율리	농업		38				○		오관옥	1년6월
김여진金麗鎭	오동면	上九里	농업		66				○			1년3월
김하경金河京	오동면	상구리	농업		25				○		홍석정	1년6월
오병선吳炳善	대천면	사창리	농업		20				○		한,홍	1년
임창운林昌云	도소면	興洞里	농업		37					○	홍,이시용	금고6월
이시용李時庸	도소면	흥동리	농업	전도사	51					○	홍석정	금고6월
이두천李斗闡	공포면	岐內里	농업		31					○	홍석정	금고6월
박태수朴泰守	수안면	창후리	농업		54		○				홍석정	1년3월
* 조선총독부 기록에 나타난 사상자												
홍석정洪錫貞	수안면	석교리*		前교구장		○			○			(시위 중 사망)
한청일韓淸一	수안면	석교리*		전교사*		○	○		○			(시위 중 사망)
오관옥吳觀玉	대천면	시리원						○	○			(시위 중 사망 추정)
홍순걸洪淳杰				前교구장*					?			(부상, 기소 중지)

* '주소'의 '*'는 각각 자식의 주소를 따랐다(홍석정 → 홍두익, 한청일 → 한병익). '敎區內 지위'의 '*'는 위의 조규태 논문에 의거한다. '혐의' 중 '*'는 고등법원 예심 판결에만, '**'는 1심(경성지방법원) 판결에만 나온다. '연락·선동'의 '홍'은 홍석정, '한'은 한청일, '오'는 오관옥을 말한다.

65) 高等法院, 「1919特豫6,7,10號 決定書(安鳳河 등 71인)」, 1920.3.22; 京城地方法院, 「1919刑公402號 判決(安鳳河 등 70인)」, 1920.8.7; 京城覆審法院, 「1920刑控528·529·530 判決(安鳳河 등 68인)」 1920.11.22. 海州地方法院 瑞興支廳 檢事分局, 「谷山騷擾李景燮 外 6人 調書」, 1919.3.28; 조규태, 앞의 글, 122-123면.

▮ 참고문헌

『동아일보』, 『매일신보』.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5: 朝鮮 1: 三・一運動 1』, 東京: みすず書房, 1966.
京城覆審法院, 「1920刑控524號 判決(朴擎得)」, 1920.10.30.
_____, 「1920刑控528・529・530 判決(安鳳河 등 68인)」, 1920.11.22.
京城地方法院, 「1919特豫1・5號 決定(孫秉熙 등 47인)」, 1919.8.1.
_____, 「1919刑公402號 判決(安鳳河 등 70인)」, 1920.8.7.
高等法院, 「1919特豫6,7,10號 決定書(安鳳河 등 71인)」, 1920.3.22.
국가보훈처 편,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 1: 國際聯盟篇』, 國家報勳處, 1991.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史料叢書11)續陰晴史』 下, 國史編纂委員會, 1960.
_____, 『韓國獨立運動史(二)』, 國史編纂委員會, 1966.
_____,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1: 三一運動 Ⅰ』, 國史編纂委員會, 1990a.
_____,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2: 三一運動 Ⅱ』, 國史編纂委員會, 1990b.
_____,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3: 三一運動 Ⅲ』, 國史編纂委員會, 1990c.
_____,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4: 三一運動 Ⅳ』, 國史編纂委員會, 1991a.
_____,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5: 三一運動 Ⅴ』, 國史編纂委員會, 1991b.
_____,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6: 三一運動 Ⅵ』, 國史編纂委員會, 1993.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한일관계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a.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별책 1: 독립신문』, 국사편찬위원회, 2005b.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2: 3.1운동사(상)』,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a.
_____, 『독립운동사자료집 4: 3.1운동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b.
_____, 『독립운동사자료집 6: 삼일운동사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c.
박은식 지음, 김도형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백암박은식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巖朴殷植全集 제2집』, 동방미디어(주), 2002.
李炳憲, 『三・一運動祕史』, 時事時報社出版局, 1959.
朝鮮總督府 編, 『朝鮮法令輯覽 上-下卷』, 1940a-b.
黃海道遂安郡敎區室(?), 『遂安郡天民寶錄』, 1909.

김승태, 「3.1독립운동과 선교사들의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105-159면.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기획, 『독립운동총서-2: 3・1운동』, (주)민문고, 1995.
성주현, 「3.1운동과 공세적 만세시위의 전개—강서군・맹산군・수안군을 중심으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 한국사연구회 편, 경인문화사, 2019, 133-163면.
이정은,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
임경석, 「3.1운동기 친일의 논리와 심리—『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제69호, 한국

역사연구회, 47-74면.
장 신, 「삼일운동과 조선총독부의 司法 대응」, 『역사문제연구』 제18호, 역사문제연구소, 2007, 141-160면.
정병욱,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와 사료 비판」, 『역사의 창』 2019년 상반기 통권 48호, 국사편찬위원회, 2019, 24-29면.
조규태, 「황해도 수안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崇實史學』 제23집, 한국숭실사학회, 2009, 117-146면.
千寬宇, 「民衆運動으로 본 三·一運動」,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集』, 東亞日報社, 1969, 659-666면.
최우석,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한일관계사료집』,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제99호, 서울역사편찬원, 2018, 87-126면.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松田利彦,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 一九〇五~一九四五年』, 校倉書房, 2009.
原口由夫, 「三·一運動彈壓事例の研究—警務局日次報告の批判的檢討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23輯, 朝鮮史研究會, 1986, 215-243面.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2019.2, http://db.history.go.kr/samil.

【Abstract】

Reconstructing the historical narrative of the Protest in Suan of Hwanghae Province in March 1919

Jung, Byung-Wook*

The protest that took place in Suan-myeon, Suan-gun of Hwanghae Province is a prototype of 'aggressive protest', during which the participants demanded the military police to return to Japan and relinquish their office building while risking the shootings that happened three times a day. However, such historical narrative of the protest was produced as scholars rephrased the negatively charged terminologies and interpretations in a more positive light without critical analysis of the primary sources. The negatively nuanced terminologies ('raid', 'riot', etc.) and interpretations (attempts to 'take over' the military police) employed to describe this protest came from the Japanese military police's attempt to justify their shootings and Government General of Joseon's prosecutors and judges' attempts to sentence the accused to treason. This study strives to cast reasonable doubt on the established understanding of the protest and build a new historical narrative based on new interpretations of the frequency of the protest, the reason for shootings and the demands of the protesters.

The fact that the protests organized by Cheondogyo believers in Suan region were not aggressive does not undermine the significance of the protests themselves. 'Release of the detainees', which was one of the demands of the protesters, needs to be brought into light though previous studies have overlooked this aspect. Religion served as a mechanism for protection and security by making up the absence of a nation-state, which has fallen and lost its function under the colonial rule. In the case of Suan, the religious leaders and followers, who were key components of such security and protection mechanism, were arrested as they prepared for the protests. Considering such context, the demand for release of the detainees and protests in Suan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hallenge of and resistance to the colonial power.

*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Keywords: Suan-myeon's protest, Cheondogyo believers, Aggressive protest, Release of the detainees, Religious community.

접수일: 2019.06.30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09